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34-01

가공식품 원료 등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물자료실



0018086

농림수산물부

C 2009-30 | 2009. 9.

가공식품 원료 등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최 지 현 선임연구위원
이 계 임 연구위원
황 윤 재 부연구위원
박 영 진 인턴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이계임	연구위원	제1-3장 집필
황윤재	부연구위원	제4-6장 집필
박영진	인턴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머 리 말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위장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993년 6월부터 도입되었다. 최근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중국산 수입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현황과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와 가공식품업체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분석하여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식품업계와 식품업체 관련 협회, 소비자 단체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9.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2008년에 중국산 수입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질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현황과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4장에서는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의향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최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제의 개선과 관련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는 1) '수입산' 표시 2) 복합원재료 표시 3)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4) '제조국' 표시 등이 있다.

첫째,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의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복합원재료 표시의 경우 표시방법이 복잡하여 식품업체가 표시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에게도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현재 21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커피류, 주류, 당류, 식염 등의 표시대상 예외품목에 대한 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2008년에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수입된 '새우깡'의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소비자의 가공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짐에 따라 원료 원산지외에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식품업체 147개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비자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가공식품 업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84.2%가 대상 품목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공식품업체의 60.5%가 원산지 표시가 꼭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대상 품목 수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업체와 소비자 모두 식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개수에 대해서도 가공식품업체와 소비자의 인식에 상당한 정도의 입장 차이가 있다. 소비자의 경우 현재의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원료 수보다 표시 대상 원료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0.2%에 달하였다. 이에 비해 업체의 경우 73.3%가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동일원료에 대해서 3개국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의 원산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가공업체와 소비자가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업체들은 대부분 현행 규정이 적절하거나 오히려 완화하여 표시대상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소비자는 모든 국가에 대해 표시하자는 의견(65.6%)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원료 원산지 표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수입산’으로 표시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기술적·비용적인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수입산’표시 규정을 전환하여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65.9%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비자들은 ‘수입국가명’ 표시로의 전환에 대해 95.0%가 찬성하고 있다. ‘수입산’ 표시 규정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업체간 그리고 가공식품업체는 매출액 규모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와 업체간 의견 차이는 ‘혼합비율’ 생략규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다. 예외조항의 개선에 대해 수입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차이가 상당하므로 원료 원산지 표시 개선의 유무와 구체적인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예외조항의 개선에 따라 기술적·비용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업체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의견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소비자는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제조국 표시 도입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제도의 이행 당사자인 업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복합원재료 표시의 경우 업체가 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복합 원재료 표시의 개선을 위해 복합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표시를 개별원료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표시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표시 사례를 발굴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업체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Improving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Processed Food

The detection of industrial chemical melamine in processed foods imported from China in 2008, has deepened the public anxiety towards imported foods. The incident has raised the need for improving the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processed foods.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setting out the reasonable criteria for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processed foods, which will provide more information for consumers and ensure the orderly distribution of processed foods in the market.

For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Chapter 2 takes a look at the current operating status of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and the recent trend of related discussions. Chapter 3 analyzes the survey result of food processing companies to find out their application status of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requirement. Chapter 4 describes the survey findings about consumers' stance on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In Chapter 5, the current status of managing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in major countries is investigated with a focus on the Japanese market. Chapter 6 provides an insight into the current issues surrounding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and respective reactions to them.

So far, a lot of views have been proposed and discussed on the ways of improving the current country of origin labeling scheme for processed foods: To name a few, firstly, it was suggested to indicate the 'name of exporting country' instead of simply marking 'imported', which is allowed under the exception of the labeling requirement, in order to fulfil the consumers' right to know. Secondly, a need of labeling improvement was pointed out regarding the foods made of multiple ingredients. The listing-up of entire ingredients is often complicated, troubling food companies and inefficient in delivering information to consumers. Thirdly, the need of expanding the scope of food items subject to labeling was raised. Currently 211 food items are mandated for labeling, but discussions are under way to expand the scope by including labeling exclusion items such as coffee, alcohol, sweets and table salt.

Fourthly, a review is under way on marking the name of manufactured country of processed or half-processed food products on top of the origin of country for raw materials. This is in line with the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on the places of food processing, which was sparked by the occurrence of the 'shrimp snack' scandal in 2008 where foreign materials were found in the shrimp snack which was initially processed in China and imported back to Korea.

In the survey, 147 food processing companies and 500 consumers were questioned and found that to some degree all of them agreed to the need of country of origin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However, regarding some key controversies, they have shown different opinions. Consumers and processed food companies are found to take opposite positions on expanding the scope of labeling. According to the survey, consumers agreed to expanding the scope of items subject to labeling by 84.2%, while processed food companies said the scope of labeling should be rather reduced by 60.5%. Nevertheless, among the food items currently excluded from mandatory labeling, for table salt, both of the two groups were positive about its labeling.

Also, difference is notable between consumers and food processing companies related to the number of ingredients required for country of origin labeling. In the survey, consumers who are for expanding the scope of ingredients subject to mandatory labeling accounted for 70.2%. To the contrary, 73.3% of responded food processing companies said the labeling should cover main ingredients only as it is now. Under the current law, when the ingredients from more than three countries are used, only main two country of origins are indicated. On this, food processing companies and consumers showed difference. Food processing companies said the current law is appropriate or needs to be eased by reducing the number of origin countries mandated for labeling. However, 65.5% of consumers responded opted to mandate the labeling of all countries of origin.

Again in the survey, a controversy was found surrounding the shift in labeling from 'imported' to 'the name of exporting country.' Under the current labeling exception, food companies are allowed to simply mark 'imported' due to technical difficulty and cost issue. In this regard, they are objecting to the idea of mandating the labeling of 'name of exporting country' by 65.9%. However, consumers were found to be positive about the idea by 95.0%. The gap is also clear regarding the details on implementing the change between consumers and food processing companies as well as between food processing

companies by size. Consumers and food processing companies didn't reach an agreement on the idea of deleting 'mix ratio' from label. As shown above, the ways of improving the current rules permitting labeling exclusion are very much different between consumers and food importer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improvements in labeling country of origin for raw materials and detailed implementation methods, not only consumers but also food processing companies which bear the technical and cost burden,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labeling of 'manufactured country (intermediary manufactured country),' companies with more revenues tend to be more negative. To the opposite, consumers prefer to making country of origin and manufactured country labelled for all food products. The labeling of manufactured country is meaningful in terms of providing information with consumers. However, on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view of the companies, which are actually following the rule, is critical so that their opinions should be reflected on improving the labeling plan.

Lastly, the difficulty in labeling multiple ingredients was pointed out. The survey shows that the dominant view of the food processing companies is that it is difficult to label country of origin and the mix ratio for multiple ingredients at the individual ingredient level. Therefore, down the road, various exemplary labeling cases should be searched for, and both consumers and food processing companies should be invited to review and offer their opinions on them.

Researchers: Choi Ji-Hyun, Lee Kyei-Im, Hwang Yun-Jae, and Park Young-Jin
Research period: 2009. 4. - 2009. 8.
E-mail address: jhchoi@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주요 연구 내용	4
4. 연구 범위와 방법	6

제2장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과 논의 동향

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현황	8
2. 논의 동향	14

제3장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실태 평가

1.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17
2.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19
3. 예외조항	24
4. 기타 표시개선 사항	34
5. 소결	50

제4장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평가

1. 표시 이용 실태 및 인식	52
2. 가공식품 원산지 제도 평가	58
3. 소결	71

제5장 주요국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

1. 일본 72
2. 기타 국가 80

제6장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쟁점과 대응 방향

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여부 85
2.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와 국가 수 86
3. 원료 원산지 표시 예외조항 87
4.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 91
5. 복합 원재료 표시 92

부록 1. 가공식품업체 의견 조사 결과(식품공업협회 의견) 93

참고 문헌 101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10
표 2-2. 가공식품 허위표시 단속실적(2008년)	13

제3장

표 3-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18
표 3-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필요 이유	18
표 3-3.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기여도 ·	18
표 3-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조정 여부	19
표 3-5.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조정 여부(주요 품목별)	19
표 3-6. 원산지 표시 필요 품목	20
표 3-7.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의 조정 여부	20
표 3-8.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	21
표 3-9.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주요 품목별)	21
표 3-10. 원산지 표시 대상 적정 원료 개수	22
표 3-11. 혼합원료(3개국 이상)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여부	22
표 3-12. 혼합원료 사용 제품의 현행 표시대상국 갯수의 적절성	23
표 3-13. 혼합원료 사용 제품의 현행 표시대상국 갯수의 적절성(주요 품목별)	23
표 3-14. 적정 표시대상국의 수	23
표 3-15. 혼합비율 생략 제품의 생산 실태	24
표 3-16.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	24
표 3-17.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주요 품목별)	25

표 3-18. 혼합비율 표시규정의 대안에 대한 의견	25
표 3-19. 수입산 표시 제품의 생산 여부(월 매출액별)	26
표 3-20. ‘수입산’ 표시 제품수 비율	26
표 3-21. ‘수입산’ 표시 매출액 비율	27
표 3-22.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27
표 3-23.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28
표 3-24.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업체의 수용가능성(비용부담 측면 고려)	29
표 3-25.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업체의 수용가능성(기술적 조건을 고려)	29
표 3-26.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업체의 수용가능성(소비자 만족도 고려)	30
표 3-27.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업체의 수용가능성(종합적 고려)	30
표 3-28.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가장 수용가능한 방안(월 매출액 별)	31
표 3-29.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수입국가의 고정 유무	32
표 3-30.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즉시 적용 가능성	32
표 3-31. 표시규정 전환 즉시 적용이 어려운 이유	32
표 3-32. 표시규정 전환의 유예기간	33
표 3-33. 포괄적 표시 방안에 대한 의향	33
표 3-34. 포괄적 표시 방안에 대한 의향(주요 품목별)	34
표 3-35. 다른 국가의 가공 및 반가공된 제품의 생산여부	34
표 3-36. 다른 국가의 가공 및 반가공된 제품의	35
표 3-37. ‘제조국가’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향	35
표 3-38.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36
표 3-39.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36
표 3-40. 복합원재료 사용유무	37
표 3-41. 복합원재료 표시에 따른 어려움	37
표 3-42. 복합원재료 표시에 따른 어려움(주요 품목별)	37

표 3-43. 복합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표시를	38
표 3-44. 복합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표시를	38
표 3-45. 개별원료 기준 수용이 어려운 이유	39
표 3-46. 유통기한 표시 수단(월 매출액별, 복수응답 가능)	39
표 3-47. Z-프린터 보유기기 대수(월 매출액별)	40
표 3-48. 레이저 프린터 보유기기 대수	40
표 3-49. ‘수입국가명’을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수용여부	41
표 3-50. ‘수입국가명’을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할 때 수용의 어려움	41
표 3-51. 홈페이지 보유 유무	42
표 3-52. 홈페이지 개설 가능성	42
표 3-53. 홈페이지 개설 불가능 이유	42
표 3-54. 포장재 연간 평균 변경 횟수	43
표 3-55. 수입국 변경에 의한 포장재 연간 변경 횟수	43
표 3-56. 포장재 변경 이유	44
표 3-57. 제조원가에서 포장재 비중과 표시 전환시 제조원가 상승 예상 수준 ..	44
표 3-58. 싸이로 보유 유무	45
표 3-59. 싸이로 1기 증설 시 비용 발생 수준	45
표 3-60. 수입국명 의무표시에 따른 추가 증설 예상 기수	46
표 3-61. 싸이로 보유시 싸이로 증설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 수준	46
표 3-62. 표시가 의무화될 경우 생산공정 정지 가능성	47
표 3-63. 생산공정 정지 예상시간	47
표 3-64. ‘수입국명’ 표시에 의해 예상되는 비용 항목	48
표 3-65. 표시를 전환할 경우 제품 제조원가 상승 수준	48
표 3-66.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인지 가능 수준	49
표 3-67.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표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49
표 3-68.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	50

제4장

표 4-1.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53
표 4-2.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관심 정도	53
표 4-3.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54
표 4-4.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필요 이유	54
표 4-5. 구매시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	55
표 4-6. 구매시 원산지 확인 주요 이유	55
표 4-7. 가공식품의 원산지 확인 방법	56
표 4-8. 가공식품 구입시 원재료 성분표시 확인 여부	56
표 4-9. 가공식품 구입시 원재료 및 함량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원재료의 원료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	56
표 4-10. 품목류별 원재료 및 함량 표시의 원산지 확인 여부	57
표 4-11. 원산지 확인후 미구매 경험	57
표 4-12.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	58
표 4-13.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미신뢰의 주된 이유	58
표 4-1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조정 여부	59
표 4-15. 원산지 표시 필요 품목	59
표 4-16.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의 조정 여부	60
표 4-17.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	61
표 4-18. 원산지 표시 대상 적정 원료수	61
표 4-19. 3개 국가 이상의 원료 혼합 사용시 2개 ‘국가명’ 표시 규정의 적절성	62
표 4-20.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	62
표 4-21. ‘수입산’ 표시 규정의 적절성	63
표 4-22.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63
표 4-23.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 방안에 대한 평가	63

표 4-24.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 방안에 선호도 · 64

표 4-25. ‘수입산’ 표시 제품과 비교한 ‘수입국명’ 표시 제품에 대한 추가 지불 의향 64

표 4-26. ‘수입산’ 표시 제품과 비교한 ‘수입국명’ 표시 제품에 대한 추가 지불 수준 64

표 4-27. 포괄적 표시 방안에 대한 의향 65

표 4-28.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에 대한 의향 66

표 4-29.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향 66

표 4-30.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인지 가능 수준 67

표 4-31.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표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67

표 4-32.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간의 불일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 경험 68

표 4-33. 불일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 경우 주요 문의처(중복 응답) 68

표 4-34. 최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세의 변화 69

표 4-35.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기여도 · 69

표 4-36.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시 어려움 70

표 4-37.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 70

제5장

표 5-1. 일본의 가공식품원산지 표시대상 20개 품목군 75

표 5-2. 복수 원산지 원료 사용시 표시 사례 77

표 5-3. 원산지 표시 도입 경과 81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체계도	7
----------------------	---

제5장

그림 5-1. 대상 품목의 확대 경위	73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1991년 7월부터, 국내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993년 6월부터 도입되었다.
- 현재 가공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나,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정의·분류체계는 식품공전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정의된 품목 중 211개 품목이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가지의 원료를 포함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여러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자주 변경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시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현

행 원료 원산지 표시는 예외적으로 국가명 이외에 ‘수입산’표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가명 표시의 원칙에 위배되며, 복합원재료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표시방법이 복잡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수입산 식품의 급증과 특정국 수입 식품으로부터의 위해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요구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 특히 2008년에 중국산 수입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9월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으로 개선하고 표시대상 원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제의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개선안에 대한 식품업계 의견 수렴과 현지조사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 이 연구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질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 이동필·성명환·이계임 외(2001)는 가공식품과 관련된 표시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가공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표시제도의 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표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식품표

시제도의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수행된 연구인만큼 표시제도에 대한 법적, 경제적 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 노영화·김인숙(1999)은 국내외 식품표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표시여부, 표시형태, 표시상태)와 소비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식품표시 인식과 의견)를 실시하였다.
 - 이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과 코덱스(Codex)의 표시제도에 대해 폭 넓은 검토를 하였으나 주로 표시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표시제도의 법, 실행 및 감시체계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상품목이 가공식품에 국한되어 농산물관련 제도 검토가 상당부분 생략되어 있다.
- 이계임 외(2004)는 농산물 표시제도 현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평가와 주요국의 표시제도 현황과 시사점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농산물 표시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확대·재정립,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수출입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문제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기준을 검토하여 재정립 등이 제안되었다.
- 이계임 외(2005b)는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법률적 분석, 소비자·가공업자·전문가의 의견, 주요국(일본, 미국, EU)의 원산지표시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박동규 외(1995)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검토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

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이 시도되었다.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의 확대,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상표화, 원산지표시방식 개선, 단속의 효율화, 소비자단체와의 협조강화, 단속관련규정의 개정·정비가 제시되었다.

- 방호경(2004), 송송이(2005)는 FTA 원산지규정의 개념, 목적 등의 주요 특징을 검토하였다.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안을 비교분석하고 FTA 원산지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 한국섬유개발연구원(2004)은 가죽·가방, 의류, 신발, 완구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업종 현황과 소비자 조사를 통해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안)을 마련하였다. 판정기준으로 ‘당해물품의 HS세번 6단위가 국내에서 변경되며, 총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안을 제안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표시·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 실적이 많지 않으며, 특히 원산지 표시제도와 같이 특정 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원산지표시제도 등 개별 제도의 구체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주요 연구 내용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과 관련 논의 동향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현황
 - 법률적 규정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현황
- 관련 논의 동향

■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공식품 산업 유형별 원산지 표시현황
 - 가공품 유형별 원산지 표시현황
 -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평가
 - 원산지 표시관련 당면 문제점
-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요구사항

■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평가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이용현황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방안에 대한 평가
- 원산지 표시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 주요국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관련 현황과 시사점

-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현황
- 일본의 관련 논의동향
- 기타 국가의 관련 제도 현황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

- 원료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검토
- '수입산' 표시의 대안별 검토
- 기타 표시방법 개선방안(복합원재료, 혼합비율표시 등)

4.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 이 연구에서는 농축수산물가공품과 관련된 원산지표시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일반가공품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주요 분석대상 표시관련 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과 관련 고시·규정이다.

■ 연구 방법

- 문헌검토와 관련 기관 방문조사
 - 관련 법률과 관련 문헌자료 수집과 검토
- 가공식품업체 조사
 - 조사내용: 원료원산지 표시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
 - 대상품목: 제과, 유지, 육가공, 유가공, 음료, 제분, 장류, 연육, 당 등
 - 조사대상: 주요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방문조사와 품목별·규모별로 선정된 147개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식품공업협회,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의 협조와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추진
-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내용: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인지도, 개선방안 등
 - 조사대상: 수도권 소비자가구 500호

○ 외국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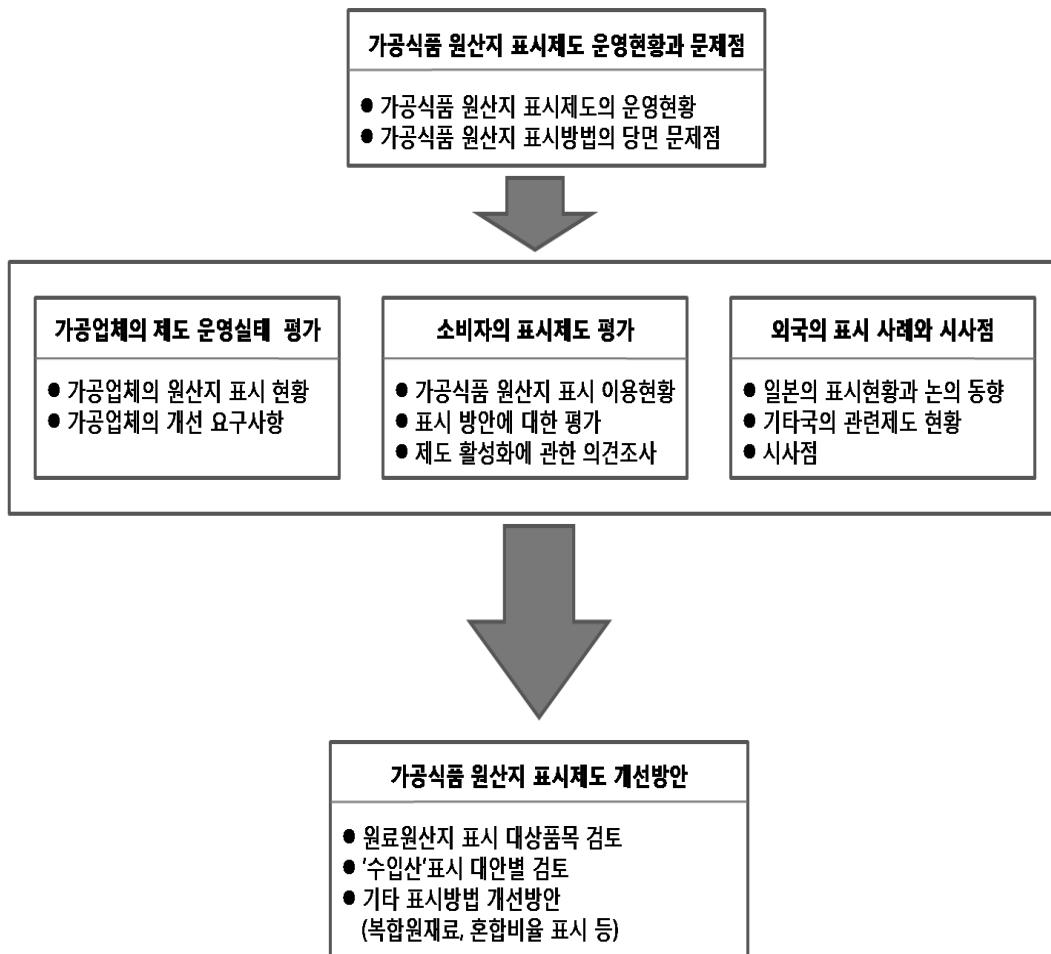
-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한 일본의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관련 자료 검토

○ 자문회의 개최

- 가공식품 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관련인 대상 자문회의 개최

■ 연구 체계도

그림 1-1. 연구 체계도



제 2 장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 현황과 논의 동향

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운영현황

1.1. 적용 법률

-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1993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출입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199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두 법간에는 추진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을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도모’로 규정하고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23조 등에서 원산지표시제도의 적용대상 및 대상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동법 시행령 23조에는 대상품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

목으로 한다'고 법률 15조와 유사하게 재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서 대상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23조에는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인 경우는 “대외무역법” 23조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 원산지표시방법은 시행령 24조와 시행규칙 23조·24조에, 원산지의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 25조에 규정되어 있다.
 -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 시행령에서는 가공품의 원산지를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더라도 국내가공품이라고 인정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

1.2. 대상품목

-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상의 기준·분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 이후 약간씩 확대하여 현재 2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2-1>.
 - 식품공전에서는 포장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나,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서는 벌크형태 판매식품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2-1.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3. 가공품 : 당해품목은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과자류(포장된 것) (12)	빵 또는 떡류(식빵, 빵, 도넛, 떡류, 기타 빵 또는 떡류), 건과류(비스킷류, 한과류, 스넵과자류, 기타 건과류), 캔디류(양갱), 초콜릿류, 젼류
아이스크림제품류(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서류
유가공품(16)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식육제품(2)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통·병조림(15)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참다래, 토마토, 밤, 자두, 옥수수, 죽순, 버섯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두부류(7)	두부류(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목류(목, 혼합목, 건조목)
식용유지류(21)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미강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아가린류, 고추씨기름, 기타식용유지, 우지, 돈지
다 류(4)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음료류(5)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면 류(10)	건면류(국수, 냉면, 당면),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냉동면류, 파스타류
특수용도식품(5)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미식품(15)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 가공품,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인삼제품류(12)	홍삼, 백삼, 태극삼,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 통·병조림류, 인삼과자류, 당침인삼, 기타인삼식품, 홍삼차류, 홍삼음료, 기타홍삼식품
김치·절임식품(9)	배추김치, 기타김치, 식염절임, 장류절임, 식초절임, 당절임, 기타절임,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기타식품류(20)	즉석건조식품, 메주, 팥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전분,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포장된 것), 추출가공식품, 콩나물, 도시락류, 모조치wm, 식물성크림, 팜콘용옥수수 가공품, 코코아가공품류, 밀가루, 전쌀, 생식류, 시리얼류,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단순가공품(8)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으로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축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나. 건강기능식품공전 정의 품목	
영양보충용식품(1)	농산물을 원료로한 모든 품목
인삼제품(4)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분말, 인삼분말, 인삼성분함유제품
홍삼제품(4)	홍삼농축액, 홍삼농축액분말, 홍삼분말, 홍삼성분함유제품
로얄제리제품(3)	생로얄제리, 동결건조로얄제리, 로얄제리제품
화분제품(4)	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제품추출물
효소함유제품(4)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배아유제품(4)	배아유,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 배아유제품,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제품
배아제품(5)	쌀배아, 밀배아, 쌀배아제품, 밀배아제품, 배아혼합제품
포도씨유제품(2)	포도씨유,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1)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버섯제품(2)	버섯자실체제품, 버섯균사체제품
알로에 제품(9)	알로에 겔, 알로에 겔농축액, 알로에 겔분말, 알로에 착즙액, 알로에분말, 알로에 겔제품, 알로에 착즙액제품, 알로에 겔분말제품, 알로에분말제품
매실추출물제품(2)	매실추출물, 매실추출물제품
프로폴리스제품(2)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3. 표시방법

- 국내가공품 원산지표시는 당해원료 중 배합비율이 50%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를,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원료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 시 그 특정원료를 함께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원료원산지 표시방식은 국산원료에 대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 또는 시·군명을, 수입원료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농산물가공품이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거 완전생산물품의 생산국(55조 1항 1호) 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55조 1항 2호)를 원산지로 표시,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55조 1항 3호).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포장된 가공품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 중 성분(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하며,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글씨크기는 포장표면적에 따라서 8~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¹⁾ 글씨 색깔은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하며,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라벨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제4조 ①).

1) 8포인트(12급) 이상 크기 표시가 곤란한 경우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료농산물을 환산하여 원산지를 표시한다(제4조 ②).
-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사용 시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제4조 ③).
-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을 표시한다(제4조 ④).
- 수입원료 사용 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되거나 최초 1년 이내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변경은 특정원료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료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4조 ⑤).
- 국내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는 ‘원료농산물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4. 관리 실태

-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제 대한 지도·단속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 2008년에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적발은 총 732건이 이루어졌다. 이중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8건(1.1%), 수입산 원료 458건(62.6%), 국산과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266건(36.3%)이 허위표시에 의해 적발되었다<표 2-2>.
 -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입산 원료에 대해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혼합 원료에 대해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원료를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표 2-2. 가공식품 허위표시 단속실적(2008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중
국산	시·군명 허위표시	8	1.1
소계		8	1.1
수입산	기타국가→국산	53	7.2
	미국→국산	91	12.4
	북한→국산	2	0.3
	중국→국산	230	31.4
	호주→국산	8	1.1
	수입국가명허위표시	74	10.1
소계		458	62.6
혼합	국산+수입→국산	81	11.1
	국산+중국→국산	130	17.8
	수입+수입→국산	13	1.8
	중국+수입→국산	22	3.0
	수입+수입→수입	20	2.7
소계		266	36.3
합계		732	100.0

자료: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

1.5. 표시관련 벌칙

-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제15조(원산지표시)에 의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시키는 행위, 원산지표시가 된 물품에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원산지 표시등의 위반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법 제18조의 2에 의해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 벌칙에 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장에 명시되어 있다. 부과 의무자가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가 된 물품에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논의 동향

- 2008년에 중국산 수입가공품에서 멜라민 검출 등 가공식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9월 25일 식품안전관리대책 발표 시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10월 2일, 10월 9일) 및 식약청 국감 시(10월 9일) 후속대책에 수입산 표시방법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보고한 바 있다.
 - 10월에는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주관으로 수입산 표시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회가 추진되었다(10월 15일, 10월 22일).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08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1차 식품업계 의견수렴 및 현지조사(11.3~11.7), 2차 식품업계 의견수렴 및 현지조사(12.4~12.5)를 실시하였다. 이밖에 12월 11일에는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제의 개선과 관련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는 1) ‘수입산’ 표시 2) 복합원재료 표시 3)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4) 제조국 표시 등이 있다.

■ 수입산 표시

- 2008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의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업체의 경쟁력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공식품업체는 ‘수입국가명’ 표시로의 전환에 의해 포장재 신규 제작과 기존의 포장재 폐기에 따른 비용과 저장시설, 인쇄 장비 등 추가 설비투자에 의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원료 관리 및 표시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복합원재료 표시

- 복합원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배합비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 가공품을 복합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원재료에 대한 표시방법이 복잡하여 식품업체가 표시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에게도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현재 21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커피류, 주류, 당류, 식염 등의 표시대상 예외품목에 대한 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 2008년에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수입된 ‘새우깡’의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소비자의 가공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원료 원산지외에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 3 장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실태 평가

- 이 장에서는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1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²⁾

1.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는 63.4%의 업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1>.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11개업체(7.5%)에 불과하였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가 필요한 주요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64.8%)과 불안감 해소(30.8%)라고 응답하였다<표 3-2>.

2) 조사대상 가공식품업체의 주요 생산품목은 조미식품 35개(17.6%), 어묵 32개(16.1%), 두부류 25개(12.6%), 음료류 23개(11.6%), 과자류 17개(8.5%), 면류 16개(8.0%), 다류 14개(7.0%), 유가공품 7개(3.5%), 식용유지류, 김치절임식품류와 특수용도식품이 각각 4개(2.0%), 아이스크림류, 식육제품, 인삼제품류, 떡류가 각각 3개(1.5%), 기타 6개(3.0%) 등 이었다. 월 평균 매출액 분포는 1천만원 미만 10개(6.8%),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2개(20.4%),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1개(14.3%),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43개(29.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6개(10.9%),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8개(5.4%),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개(2.72%),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5개(3.4%), 100억원 이상 10개(6.8%)업체이었다.

표 3-1.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단위: 개(%)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는 편임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5(3.4)	6(4.1)	42(29.0)	76(52.4)	16(11.0)	145(100.0)

표 3-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필요 이유

단위: 개(%)

구분	빈도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59(64.8)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28(30.8)
국내 농업 보호	2(2.2)
기타	2(2.2)
합계	91(100.0)

- 가공업체들은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며(51.4%), 이러한 제도가 가공업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54.1%). 또한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53.4%)와 선택권 보장(60.7%)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표 3-3>.

표 3-3.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기여도

단위: 개(%)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리함	합계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먹는데 기여	5(3.4)	17(11.6)	49(33.6)	62(42.5)	13(8.9)	146(100.0)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에 기여	5(3.4)	14(9.6)	48(32.9)	61(41.8)	18(12.3)	146(100.0)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	6(4.1)	10(6.8)	52(35.6)	67(45.9)	11(7.5)	146(100.0)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	3(2.1)	8(5.5)	46(31.7)	68(46.9)	20(13.8)	145(100.0)

2.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 표시 대상 품목수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업체가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60.5%)<표 3-4>. 품목별로 큰 의견 차이는 없었다<표 3-5>.
 -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자주 먹는 식품(20.8%), 소비량이 많은 식품(18.8%),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16.9%) 등을 제시하였다<표 3-6>.

표 3-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조정 여부

단위: 개(%)

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가 꼭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	89(60.5)
대상 품목수를 확대해야 한다	23(15.6)
현행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24(16.3)
잘모르겠다	11(7.5)
합계	147(100.0)

표 3-5.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조정 여부(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과자류	디류	두부류	면류	어묵류	음료류	조미 식품류
원산지 표시가 꼭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축소	12(70.6)	10(71.4)	18(72.0)	11(68.8)	13(40.6)	21(91.3)	18(51.4)
대상 품목수 확대	3(17.6)	4(28.6)	1(4.0)	2(12.5)	4(12.5)	1(4.3)	10(28.6)
현행대로 운영	2(11.8)	-	6(24.0)	-	9(28.1)	1(4.3)	5(14.3)
잘모르겠다	-	-	-	3(18.8)	6(18.8)	-	2(5.7)
합계	17(100.0)	14(100.0)	25(100.0)	16(100.0)	32(100.0)	23(100.0)	35(100.0)

주: 주요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표 3-6. 원산지 표시 필요 품목

단위: %

구분	비중
자주 먹는 식품	20.8
소비량이 많은 식품	18.8
가공식품 원료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품	10.0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	16.9
가공공정이 단순하여 원료 농수축산물에	7.3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가공식품의 품질 차	16.4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품목	9.5
기타	0.2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3+2순위×2+1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의 비중을 계산함.

■ 예외 품목

- 커피, 주류, 당류, 식염 등 원산지 표시제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체의 약 40%이상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7>.
- 예외 품목 중 식염이 53.8%로 적용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밖에 커피 47.6%, 주류 44.4%, 당류 39.4%순이었다.

표 3-7.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의 조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혀 적용될 필요가 없음	적용될 필요가 없는 편임	보통	적용될 필요가 있는 편임	적용될 필요가 있음	합계
커피	13(8.8)	29(19.7)	40(27.2)	33(27.2)	30(20.4)	145(100.0)
주류	8(5.6)	29(20.1)	43(29.9)	30(20.8)	34(23.6)	144(100.0)
당류	16(10.9)	28(19.0)	43(29.3)	34(23.1)	24(16.3)	145(100.0)
식염	11(7.5)	21(14.3)	34(23.1)	37(25.2)	42(28.6)	145(100.0)

■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개수

○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개수에 대해서는 73.3%의 업체가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22.6%의 업체는 현행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하거나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 확대하거나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표시 원료 개수로는 3개가 적당하다는 업체가 4개 업체(33.3%),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고 한 업체가 3개 업체(25.0%)였다<표 3-10>.

표 3-8.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

단위: 개(%)	
구분	빈도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 없음	6(4.1)
주원료 위주로 표시하는 현행대로 추진 필요	107(73.3)
현행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	12(8.2)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	21(14.4)
합계	146(100.0)

표 3-9.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과자류	다류	두부류	면류	어묵류	음료류	조미식품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없음	1(5.9)	-	-	-	4(12.5)	-	-
주원료 위주로 표시하는 현행대로 추진 필요	13(76.5)	8(57.1)	23(95.8)	14(87.5)	20(62.5)	19(82.6)	23(65.7)
현행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	2(11.8)	2(28.6)	-	2(12.5)	3(9.4)	3(13.0)	4(11.4)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	1(5.9)	4(14.3)	1(4.2)	-	5(15.6)	1(4.3)	8(22.9)
합계	17(100.0)	14(100.0)	24(100.0)	16(100.0)	32(100.0)	23(100.0)	35(100.0)

주: 주요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표 3-10. 원산지 표시 대상 적정 원료 개수

단위: 개(%)

구분	빈도수(%)
3개	4(33.3)
4개	3(25.0)
5개	1(8.3)
6개이상	1(8.3)
모두 표시	3(25.0)
합계	12(100.0)

■ 혼합원료

- 조사대상 가공식품 업체 중에서 동일원료에 대해 3개국 이상의 혼합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과반수이상인 61개(41.8%)이었다<표 3-11>.
 - 혼합원료 사용업체들은 대체로 현재의 혼합원료에 대한 2개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0%)<표 3-12>. 이러한 의견은 품목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표 3-13>.
 -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는 16개(26.7%)였으며, 이들 중 10개 업체(62.5%)가 1개국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3-14>.

표 3-11. 혼합원료(3개국 이상)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여부

단위: 개(%)

구분	빈도수(%)
생산하고 있다	61(41.8)
생산하지 않는다	85(58.2)
합계	146(100.0)

표 3-12. 혼합원료 사용 제품의 현행 표시대상국 갯수의 적절성

단위: 개(%)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7(11.7)	9(15.0)	17(28.3)	25(41.7)	2(3.3)	60(100.0)

표 3-13. 혼합원료 사용 제품의 현행 표시대상국 갯수의 적절성(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과자류	2(22.2)	2(22.2)	2(22.2)	3(33.3)	-	9(100.0)
다류	-	-	2(40.0)	3(60.0)	-	5(100.0)
두부류	2(22.2)	3(33.3)	1(11.1)	2(22.2)	1(11.1)	9(100.0)
면류	1(10.0)	1(10.0)	3(30.0)	5(50.0)	-	10(100.0)
어묵류	4(19.0)	4(19.0)	5(23.8)	8(38.1)	-	21(100.0)
음료류	-	2(28.6)	3(42.9)	2(28.6)	-	7(100.0)
조미 식품류	-	-	6(46.2)	6(46.2)	1(7.7)	13(100.0)

주: 주요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표 3-14. 적정 표시대상국의 수

단위: 개(%)

구분	빈도수(%)
필요 없음	3(18.8)
1개국만 표시	10(62.5)
3개국 이상 표시	1(6.3)
모든 국가 표시	2(12.4)
합계	16(100.0)

주: 표 3-12에서 현행 표시 대상국의 개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 16명의 의견임.

3. 예외조항

■ 혼합비율 생략

-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 국명만을 표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 중 52개(36.6%)개 업체이었다<표 3-15>.

표 3-15. 혼합비율 생략 제품의 생산 실태

단위: 개(%)

구분	빈도수(%)
생산하고 있다.	52(36.6)
생산하고 있지 않다.	90(63.4)
합계	142(100.0)

-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있는 업체 중 해당 규정이 적절하다고 한 업체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업체는 절반 수준인 20%에 불과하였다<표 3-16><표 3-17>.
 - 혼합비율 생략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업체는 대부분 1개국의 혼합비율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90.0%)<표 3-18>.

표 3-16.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

단위: 개(%)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3(6.0)	7(14.0)	20(40.0)	16(32.0)	4(8.0)	50(100.0)

표 3-17.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입	보통	적절한 편입	매우 적절함	합계
과자류	-	1(12.5)	4(50.0)	1(12.5)	2(25.0)	8(100.0)
다류	-	-	1(50.0)	1(50.0)	-	2(100.0)
두부류	1(16.7)	2(33.3)	-	3(50.0)	-	6(100.0)
면류	-	1(10.0)	6(50.0)	2(16.7)	1(8.3)	10(100.0)
어묵류	2(18.2)	2(18.2)	3(25.0)	3(25.0)	1(8.3)	11(100.0)
음료류	-	-	3(75.0)	1(25.0)	-	4(100.0)
조미 식품류	-	1(6.7)	6(40.0)	6(40.0)	2(13.3)	15(100.0)

표 3-18. 혼합비율 표시규정의 대안에 대한 의견

단위: 개(%)

구분	빈도수(%)
모든 국가의 혼합비율을 정확하게 표시	1(10.0)
3개국이상의 혼합비율을 표시	-
1개국만 혼합비율 표시	9(90.0)
합계	10(100.0)

■ 수입산 표시

○ 조사대상 업체 중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147업체 중 82업체(55.8%)이었다<표 3-19>. 그러나 월 평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입산 표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의 비중이 좀 더 높았다(59.9%).

- 주요 식품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제품중 ‘수입산’ 표시 제품의 비율은 다류와 아이스크림류가 가장 적었으며, 어묵류와 두부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전체 매출액 중 수입산 표시 제품의 매출액 비율은 절임류가 가장 낮았으며, 떡류, 두부류, 즉석식품류가 가장 높았다<표 3-21>.

-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54개업체(65.9%)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3-22><표 3-23>.

표 3-19. 수입산 표시 제품의 생산 여부(월 매출액별)

단위: 개(%)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합계
생산하고 있다	25(41.0)	40(67.8)	17(63.0)	82(55.8)
생산하고 있지 않다	36(59.0)	19(32.2)	10(37.0)	65(44.2)
합계	61(100.0)	59(100.0)	27(100.0)	147(100.0)

표 3-20. ‘수입산’ 표시 제품수 비율

식품군	수입산 표시 제품수 비율		
	최소	최대	평균
어 목	0.1	1.0	0.9
장 류	0.3	1.0	0.6
다 류	0.0	0.2	0.1
제과류	0.1	1.0	0.8
음료류	0.0	1.0	0.6
면 류	0.1	1.0	0.8
떡 류	0.8	0.8	0.8
두부류	0.5	1.0	0.9
식용유지류	0.0	0.4	0.2
절임류	0.2	0.2	0.2
즉석식품류	0.3	1.0	0.7
건강기능식품류	0.7	0.7	0.7
조미료류	0.2	1.0	0.6
유가공제품류	0.1	0.3	0.2
아이스크림류	0.1	0.1	0.1

주: (수입산표시 제품수/전체제품수)를 계산한 수치임.

표 3-21. '수입산' 표시 매출액 비율

식품군	수입산 표시 매출액 비율		
	최소	최대	평균
어 목	0.2	1.0	0.8
장 류	0.3	1.0	0.7
다 류	0.0	0.4	0.2
제과류	0.1	1.0	0.6
음료류	0.0	1.0	0.4
면 류	0.3	1.0	0.8
떡 류	0.9	0.9	0.9
두부류	0.6	1.0	0.9
식용유지류	0.0	0.5	0.3
절임류	0.1	0.1	0.1
즉석식품류	0.7	1.0	0.9
조미료류	0.1	0.6	0.3
유가공제품류	0.1	0.5	0.3
아이스크림류	0.2	0.2	0.2

주: (수입산표시 제품의 매출액/전체 매출액)을 계산한 수치임.

표 3-22.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수입산 표시제품 생산 업체)

단위: 개(%)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40(48.8)	14(17.1)	14(17.1)	9(11.0)	5(6.1)	82(100.0)

표 3-23.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수입산 표시제품 생산 업체, 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과자류	4(50.0)	-	2(25.0)	2(25.0)	-	8(100.0)
다류	3(100.0)	-	-	-	-	3(100.0)
두부류	13(56.5)	4(17.4)	4(17.4)	2(8.7)	-	24(100.0)
면류	4(40.0)	-	4(40.0)	2(20.0)	-	10(100.0)
어묵류	9(37.5)	7(29.2)	2(8.3)	2(8.3)	4(16.7)	24(100.0)
음료류	5(55.6)	1(11.1)	2(22.2)	-	1(11.1)	9(100.0)
조미 식품류	9(56.3)	2(12.5)	3(18.8)	2(12.5)	-	16(100.0)

주: 주요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수입국가명' 표시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 1)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2)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3)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4)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이들 방안에 대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과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열거하는 방안에 대해 업체의 반대의견이 비교적 적었다<표 3-24><표3-25>.
- 소비자의 만족도를 고려할 경우 '수입국가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가장 적었다<표3-26>.

표 3-24.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업체의 수용가능성(비용부담 측면 고려)

단위: 개(%)

구분	매우 수용하기 어려움	수용하기 어려운 편임	보통	수용 가능함	매우 수용 가능함	합계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36(45.0)	12(15.0)	19(23.8)	11(13.8)	2(2.5)	80(100.0)
"수입국가명"을 별도로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38(47.5)	20(25.0)	14(17.5)	7(8.8)	1(1.3)	80(100.0)
"수입산" 표시를 유통지하고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	26(32.1)	12(14.8)	19(23.5)	17(21.0)	7(8.6)	81(100.0)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31(8.8)	13(16.3)	16(20.0)	17(21.3)	3(3.8)	80(100.0)

표 3-25.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업체의 수용가능성(기술적 조건을 고려)

단위: 개(%)

구분	매우 수용하기 어려움	수용하기 어려운 편임	보통	수용 가능함	매우 수용 가능함	합계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31(38.8)	14(17.5)	20(25.0)	12(15.0)	3(3.8)	80(100.0)
"수입국가명"을 별도로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33(41.3)	26(32.5)	12(15.0)	8(10.0)	1(1.3)	80(100.0)
"수입산" 표시를 유통지하고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	19(23.5)	17(21.0)	16(19.8)	22(27.2)	7(8.6)	81(100.0)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24(30.0)	20(25.0)	15(18.8)	18(22.5)	3(3.8)	80(100.0)

표 3-26.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업체의 수용가능성(소비자 만족도 고려)

단위: 개(%)

구분	매우 수용하기 어려움	수용하기 어려운 편임	보통	수용 가능함	매우 수용 가능함	합계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19(23.8)	18(22.5)	25(31.3)	14(17.5)	4(5.0)	80(100.0)
"수입국가명"을 별도로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22(27.5)	32(40.0)	13(16.3)	11(13.8)	2(2.5)	80(100.0)
"수입산" 표시를 유통지하고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	20(24.7)	15(18.5)	21(25.9)	18(22.2)	7(8.0)	81(100.0)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22(27.5)	21(26.3)	19(23.8)	13(16.3)	5(6.3)	80(100.0)

표 3-27.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업체의 수용가능성(종합적 고려)

단위: 개(%)

구분	매우 수용하기 어려움	수용하기 어려운 편임	보통	수용 가능함	매우 수용 가능함	합계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27(33.8)	19(23.8)	21(26.3)	8(10.0)	5(6.3)	80(100.0)
"수입국가명"을 별도로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29(36.3)	29(36.3)	17(21.3)	3(3.8)	2(2.5)	80(100.0)
"수입산" 표시를 유통지하고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	22(27.2)	18(22.2)	24(29.6)	8(9.9)	9(11.1)	81(100.0)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26(32.5)	18(22.5)	20(25.0)	11(13.8)	5(6.3)	80(100.0)

- 월 매출액별로 ‘수입산’ 표시 규정을 전환할 경우 선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3-28>.
 -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 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수입국가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표 3-28.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가장 수용가능한 방안(월 매출액 별)

단위: 개(%)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원료 원재료명)에 표시	45.7	38.7	17.9
‘수입국가명’을 유통기한과 함께 별도로 인쇄한다.	17.1	16.2	6.0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입국가명’ 공개	17.1	22.5	31.3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모두 열거한다.	14.3	19.8	37.3
없음	5.7	2.7	7.5
합계	100.0	100.0	100.0

주1: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임.

주2: 중복응답을 포함한 결과임.

- ‘수입산’ 표시 규정이 ‘수입국가명’으로 전환되어도 74.0%의 업체는 수입국가를 고정시킬 의향이 없었으며, 이러한 규정을 즉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업체는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6개(7.6%)에 불과하였다<표 3-29><표 3-30>.
 - 표시 규정의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는 표시방법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60.9%)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이밖에 원료 수입선의 전환이 단시간에 어려우며(15.6%), 표시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의 변경이 어렵다(15.6%)는 점도 제시되었다<표 3-31>.

- 업체들은 전환된 표시규정을 완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대체로 1년 정도(49.2%)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표 3-32>.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업체가 8개업체(66.7%)에 달하고 있다.

표 3-29.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수입국가의 고정 유무

단위: 개(%)

구분	빈도수(%)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수입국가 고정시킬 의향 있다.	20(26.0)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수입국가 고정시킬 의향 없다.	57(74.0)
합계	77(100.0)

표 3-30.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즉시 적용 가능성

단위: 개(%)

구분	적용하기 매우 어려움	적용하기 어려운 편임	보통	적용할 수 있는 편임	매우 적용 가능함	합계
1억원 미만	9(36.0)	8(32.0)	5(20.0)	3(12.0)	-	25(100.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51.3)	15(38.5)	3(7.7)	1(2.6)	-	39(100.0)
10억원 이상	9(60.0)	3(20.0)	1(6.7)	2(13.3)	-	15(100.0)
합계	38(84.1)	26(32.9)	9(11.4)	6(7.6)	-	79(100.0)

표 3-31. 표시규정 전환 즉시 적용이 어려운 이유

단위: 개(%)

구분	빈도수(%)
표시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의 변경이 어렵다	10(15.6)
표시방법을 전환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39(60.9)
원료 수입선의 전환이 단시간에 어렵다	10(15.6)
원료 수입선의 선택권이 없다.	4(6.3)
수입국이 수시로 변경된다.	1(1.6)
합계	64(100.0)

표 3-32. 표시규정 전환의 유예기간

단위: 개(%)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개월	-	-	-
3개월	1(7.7)	1(3.3)	-
6개월	3(23.1)	3(10.0)	-
1년	6(46.2)	19(63.3)	4(33.3)
기타 (시행불가)	3(23.1)	7(23.3)	8(66.7)
합계	13(100.0)	30(100.0)	12(100.0)

■ 포괄적 표시

○ 포괄적 표시는 '수입산' 표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품질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그룹에 속한 국가(예: 미국산, 캐나다산)의 원료 농산물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 포괄적 표시에 대해서는 '수입산' 표시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43.2%가 이러한 표시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업체는 32.0%이었다<표 3-33><표 3-34>.

표 3-33. 포괄적 표시 방안에 대한 의향

단위: 개(%)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13(16.0)	13(16.0)	20(24.7)	26(32.1)	9(11.1)	81(100.0)

표 3-34. 포괄적 표시 방안에 대한 의향(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과자류	1(14.3)	-	3(42.9)	1(14.3)	2(28.6)	7(100.0)
다류	2(66.7)	1(33.3)	-	-	-	3(100.0)
두부류	5(21.7)	5(21.7)	8(34.8)	5(21.7)	-	23(100.0)
면류	-	-	5(55.6)	4(44.4)	-	9(100.0)
어묵류	3(13.0)	4(17.4)	7(30.4)	5(21.7)	4(17.4)	23(100.0)
음료류	4(44.4)	-	-	3(33.3)	2(22.2)	9(100.0)
조미 식품류	-	3(30.0)	2(20.0)	5(50.0)	-	10(100.0)

주: 주요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4. 기타 표시개선 사항

■ 제조국가 표시

- 수입산 원료의 구매 후 다른 국가에서 가공 및 반가공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31개 업체(21.5%)였다<표 3-35>. 매출액 유형별로는 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대체적으로 제조국가 표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보다 많았다<표 3-36>.

표 3-35. 다른 국가의 가공 및 반가공된 제품의 생산여부

단위: 개(%)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합계
생산하고 있다	9(14.8)	13(22.4)	9(36.0)	31(21.5)
생산하고 있지 않다	52(85.2)	45(77.6)	16(64.0)	113(78.5)
합계	61(100.0)	58(100.0)	25(100.0)	144(100.0)

표 3-36. 다른 국가의 가공 및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 표시 규정에 대한 의향(월 매출액별)

단위: 개(%)

구분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 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1억원 미만	-	2(22.2)	1(11.1)	6(66.7)	-	9(100.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23.1)	3(23.1)	3(23.1)	4(30.8)	-	13(100.0)
10억원 이상	3(33.3)	1(11.1)	3(33.3)	2(22.2)	-	9(100.0)

-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32.3%가 식료품의 원산지만 표시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공지와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0%가 찬성하였다<표 3-37>. 이밖에 가공지만 표시하거나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업체의 비중이 각각 19.4%였다.

표 3-37. '제조국가'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향

단위: 개(%)

구분	빈도수(%)
식품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됨	10(32.3)
가공지만 표시하면 됨	6(19.4)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 함께 표시	6(19.4)
일부 품목(예: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 함께 표시	9(29.0)
합계	31(100.0)

■ 가공된 제품의 원료 사용

-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4.8%)<표 3-38>. 이밖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거나(29.8%), 원산지명만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22.7%)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 주요 품목 생산업체의 경우 반드시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표 3-39>.

표 3-38.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안

단위: 개(%)

구분	빈도수(%)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42(29.8)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이전단계 투입원료명만 표시	18(12.8)
원산지명만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32(22.7)
현재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	49(34.8)
합계	141(100.0)

표 3-39.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안(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과자류	다류	두부류	면류	어묵류	음료류	조미식품류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7(41.2)	6(42.9)	10(45.5)	5(31.3)	13(40.6)	7(35.0)	7(20.0)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이전단계 투입원료명만 표시	1(5.9)	1(7.1)	4(18.2)	2(12.5)	4(12.5)	2(10.0)	4(11.4)
원산지명만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3(17.6)	2(14.3)	5(22.7)	4(25.0)	4(12.5)	5(25.0)	8(22.9)
현재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	6(35.3)	5(35.7)	3(13.6)	5(31.3)	11(34.4)	6(30.0)	16(45.7)
합계	17(100.0)	14(100.0)	22(100.0)	16(100.0)	32(100.0)	20(100.0)	35(100.0)

주: 주요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 복합원재료

- 72개업체(49.3%)가 가공과정에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0>. 이중 과반수 이상(59.2%)의 업체가 평소 복합원재료 표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3-41><표 3-42>.

표 3-40. 복합원재료 사용유무

단위: 개(%)

구분	비중
복합원재료 사용한다.	72(49.3)
복합원재료 사용하지 않는다.	74(50.7)
합계	135(100.0)

표 3-41. 복합원재료 표시에 따른 어려움

단위: 개(%)

전혀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는 편임	보통	느끼는 편임	매우 느끼는 편임	합계
3(4.2)	10(14.1)	16(22.5)	33(46.5)	9(12.7)	71(100.0)

표 3-42. 복합원재료 표시에 따른 어려움(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전혀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는 편임	보통	느끼는 편임	매우 느끼는 편임	합계
과자류	-	-	2(20.0)	6(60.0)	2(20.0)	10(100.0)
다류	-	-	4(80.0)	1(20.0)	-	5(100.0)
두부류	-	2(25.0)	1(12.5)	-	5(62.5)	3(100.0)
면류	-	-	5(41.7)	6(50.0)	1(8.3)	12(100.0)
어묵류	1(5.9)	4(23.5)	2(11.8)	7(41.2)	3(17.6)	17(100.0)
음료류	2(16.7)	3(25.0)	3(25.0)	4(33.3)	-	12(100.0)
조미 식품류	-	2(11.8)	5(29.4)	10(58.8)	-	17(100.0)

주: 주요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 복합원재료 표시를 개별원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업체가 27.1%, 수용이 가능하다는 업체는 21.6%이었다<표 3-43><표 3-44>.
-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은 이러한 방안이 복합원재료의 원료배합비율을 파악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58.8%)으로 인하여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잦은 원료 수입선 변경(29.4%)도 해당 방안의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45>.

표 3-43. 복합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표시를
개별원료 기준으로 하는 방안

단위: 개(%)

수용하기 어려움	수용하기 어려운 편임	보통	수용할 수 있는 편임	매우 수용 가능함	합계
12(16.9)	26(36.6)	24(33.8)	9(12.7)	-	71(100.0)

표 3-44. 복합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표시를
개별원료 기준으로 하는 방안(주요 품목별)

단위: 개(%)

구분	수용하기 어려움	수용하기 어려운 편임	보통	수용할 수 있는 편임	매우 수용 가능함	합계
과자류	-	1(16.7)	2(33.3)	2(33.3)	1(16.7)	6(100.0)
다류	1(20.0)	4(80.0)	-	-	-	5(100.0)
두부류	2(12.5)	7(43.8)	7(43.8)	-	-	16(100.0)
면류	-	-	3(75.0)	1(25.0)	-	4(100.0)
어묵류	3(20.0)	2(13.3)	6(40.0)	4(26.7)	-	15(100.0)
음료류	1(10.0)	2(20.0)	4(40.0)	3(30.0)	-	10(100.0)
조미 식품류	1(5.6)	-	12(66.7)	2(11.1)	3(16.7)	18(100.0)

주: 주요 품목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표 3-45. 개별원료 기준 수용이 어려운 이유

단위: 개(%)

구분	빈도수(%)
복합원재료의 원료배합비율 파악 어려움	10(58.8)
고차가공품의 원료원산지 파악 어려움	1(5.9)
잡은 원료 수입선 변경	5(29.4)
기타	1(5.9)
합계	17(100.0)

■ ‘수입국가명’표시에 대한 의견과 관련 실태

[표시 수단]

- 월 평균 매출액인 1억원 미만인 업체와 1억원이상-10억원 미만인 업체는 주로 일부인을 사용하고 있었다(54.3%). 이에 비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주로 Z-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었다(38.1%)<표 3-46>.
- 월 평균 매출액인 1억원 미만인 경우 Z-프린터는 대체로 1대정도 보유하고 있는 반면, 1억원 이상인 경우 3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다<표 3-47>.
- 월 평균 매출액인 1억원 미만이거나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 레이저 프린터는 대체로 1대정도 보유하고 있는 반면, 10억원 이상인 경우 3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8>.

표 3-46. 유통기한 표시 수단(월 매출액별, 복수응답 가능)

단위: 개(%)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유통기한 표시 수단(Z-프린터)	14(17.3)	14(17.5)	16(38.1)
유통기한 표시 수단(레이저 프린터)	4(4.9)	8(10.0)	8(19.0)
유통기한 표시 수단(일부인)	44(54.3)	44(55.0)	11(26.2)
유통기한 표시 수단(스티커)	19(23.5)	14(17.5)	7(16.7)
합계	81(100.0)	80(100.0)	42(100.0)

표 3-47. Z-프린터 보유기기 대수(월 매출액별)

단위: 개(%)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음	20(62.5)	21(60.0)	4(19.0)
1대	5(15.6)	4(11.4)	-
2대	3(9.4)	4(11.4)	2(9.5)
3대이상	4(12.5)	6(17.1)	15(71.4)
합계	32(100.0)	35(100.0)	21(100.0)

표 3-48. 레이저 프린터 보유기기 대수

단위: 개(%)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음	27(90.0)	23(74.2)	6(46.2)
1대	2(6.7)	6(19.4)	3(23.1)
2대	1(3.3)	1(3.2)	1(7.7)
3대 이상	-	1(3.2)	3(23.1)
합계	30(100.0)	31(100.0)	13(100.0)

○ ‘수입국가명’을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쇄수단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3-49>. 특히 Z-프린터,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인은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보다 많았으며(40.7%), 스티커의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35.2%)과 가능하다는 의견(35.2%)의 비중이 동일하였다.

- Z-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스티커의 경우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수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었으며, 일부인의 경우 제품의 표시 인쇄절차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0>.

표 3-49. '수입국가명'을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 수용여부

단위: 개(%)

구분	비중	수용하기 매우 어려움	수용하기 어려운 편임	보통	수용할 수 있는 편임	매우 수용 가능함	합계
Z-프린터	1억원 미만	24(42.1)	18(31.6)	10(17.5)	2(3.5)	3(5.3)	57(1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7(49.1)	16(29.1)	6(10.9)	4(7.3)	2(3.6)	55(100.0)
	10억원 이상	11(44.0)	10(40.0)	3(12.0)	1(4.0)	-	25(100.0)
레이저 프린터	1억원 미만	24(43.6)	14(25.5)	11(20.0)	4(7.3)	2(3.6)	55(1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6(49.1)	18(34.0)	3(5.7)	5(9.4)	1(1.9)	53(100.0)
	10억원 이상	6(28.6)	9(42.9)	4(19.0)	2(9.5)	-	21(100.0)
일부인	1억원 미만	6(10.2)	6(10.2)	23(39.0)	18(30.5)	6(10.2)	59(1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4(25.9)	11(20.4)	11(20.4)	14(25.9)	4(7.4)	54(100.0)
	10억원 이상	7(33.3)	4(19.0)	7(33.3)	3(14.3)	-	21(100.0)
스티커	1억원 미만	6(11.1)	13(24.1)	16(29.6)	15(27.8)	4(7.4)	54(1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7(32.7)	12(23.1)	10(19.2)	10(19.2)	3(5.8)	52(100.0)
	10억원 이상	7(33.3)	5(23.8)	5(23.8)	3(14.3)	1(4.8)	21(100.0)

표 3-50. '수입국가명'을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할 때 수용의 어려움

단위: 개(%)

구분	제품 표면이 사용하기에 부적합	제품크기가 사용하기에 부적합	제품의 표시 인쇄절차가 활용하는데 어려움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합계
Z-프린터	9(9.5)	4(4.2)	22(23.2)	60(63.2)	95(100.0)
레이저 프린터	4(4.9)	5(6.1)	11(13.4)	62(75.6)	82(100.0)
일부인	4(10.3)	1(2.6)	20(51.3)	14(35.9)	39(100.0)
스티커	7(14.9)	1(2.1)	10(21.3)	29(61.7)	47(100.0)

[홈페이지]

- 설문조사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90개업체(62.1%)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51>.
-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업체들 중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41.8%)이 가능하다는 의견(29.1%)보다 많은 편이었다 <표 3-52>.
- 홈페이지가 개설 불가능한 주요 이유로는 홈페이지의 제작 및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61.9%)<표 3-53>.

표 3-51. 홈페이지 보유 유무

단위: 개(%)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홈페이지 있다	31(50.8)	36(62.1)	23(88.5)
홈페이지 없다	30(49.2)	22(37.9)	3(11.5)
합계	61(100.0)	58(100.0)	26(100.0)

표 3-52. 홈페이지 개설 가능성

단위: 개(%)

전혀 가능하지 않음	가능하지 않는 편임	보통	가능한 편임	매우 가능함	합계
7(12.7)	16(29.1)	16(29.1)	16(29.1)	-	55(100.0)

표 3-53. 홈페이지 개설 불가능 이유

단위: 개(%)

구분	빈도수(%)
홈페이지의 제작 및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	13(61.9)
홈페이지 유지 인력 부족	4(19.0)
기타	4(19.0)
합계	21(100.0)

[포장재]

- 식품업체의 연평균 포장재 변경횟수는 1회이상에서 3회미만이 6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3-54>. 이중 수입국 변경에 의한 포장재 연간 변경 횟수는 1회 미만이 49.6%로 약 절반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55>.
 - 가공식품업체의 포장재 변경의 주요 이유로는 관련 법규 등의 개정에 의한 식품표시 규정의 변경(68.5%)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56>.
 - 조사대상 업체들은 제조원가에서 포장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2.5%이고, 표시전환에 의해 평균 16.6%의 제조원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하였다<표 3-57>. 어묵류 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상승 예상 수준(56.9%)이 가장 높았고,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체가 가장 적게 예상하고 있었다(5.0%).

표 3-54. 포장재 연간 평균 변경 횟수

단위: 개(%)	
구분	빈도수(%)
1회 미만	16(11.9)
1회 이상 - 3회 미만	86(63.7)
3회 이상 - 5회 미만	23(17.0)
5회 이상	10(7.4)
합계	135(100.0)

표 3-55. 수입국 변경에 의한 포장재 연간 변경 횟수

단위: 개(%)	
구분	빈도수(%)
1회 미만	62(49.6)
1회 이상 - 2회 미만	28(22.4)
2회 이상 - 3회 미만	14(11.2)
3회 이상	21(16.8)
합계	125(100.0)

표 3-56. 포장재 변경 이유

단위: 개(%)

구분	빈도수(%)
관련 법규 등의 개정에 의한 식품표시 규정 변경에 따라	98(68.5)
수입선 변경에 따른 원산지 표시 변경 필요	20(13.6)
제품 디자인 변경에 따라	17(11.6)
배합비율변경	3(2.0)
기타	5(3.4)
합계	143(100.0)

표 3-57. 제조원가에서 포장재 비중과 표시 전환시 제조원가 상승 예상 수준

구분	포장재비용은 제조원가(=100기준)의 ()%	제조원가 ()% 상승 예상
어묵류	5.9	56.9
장류	8.2	13.8
다류	16.0	8.0
제과류	14.3	15.3
음료류	22.7	13.9
면류	8.9	15.7
떡류	15.3	19.0
두부류	13.6	12.3
식용유지류	6	6.5
건강기능식품류	11.5	-
아이스크림류	15	5.0
평균	12.5	16.6

주: 식품군별 응답업체 평균값임.

[짜이로]

- 사례조사 결과 수입산 표시 규정을 ‘수입국명’ 의무표시로 전환하는 경우 원산지가 상이한 동일 원료의 구분을 위해 짜이로의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짜이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26개업체(18.2%)였다<표 3-58>. 짜이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짜이로 1기 증설시 비용발생 수준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업체가 9개업체(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00만원 이상이 5개업체(23.8%)이었다<표 3-59>.
-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명 의무표시로 전환하는 경우 짜이로 추가 기수는 음료류가 평균 약 10대, 두부류는 평균 2.2대라고 응답하였다<표 3-60>.
- 짜이로 증설에 의해 예상되는 제조원가 상승 수준은 두부류가 32.0%로 가장 높았으며, 면류 15.0%이었다<표 3-61>.

표 3-58. 짜이로 보유 유무

단위: 개(%)

구분	빈도수(%)
짜이로 보유하고 있다.	26(18.2)
짜이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117(81.8)
합계	143(100.0)

표 3-59. 짜이로 1기 증설 시 비용 발생 수준

단위: 개(%)

구분	빈도수(%)
1,000만원 미만	9(42.9)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14.3)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9.5)
5,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2(9.5)
7,000만원 이상	5(23.8)
합계	21(100.0)

표 3-60. 수입국명 의무표시에 따른 추가 증설 예상 기수

식품군	싸이로 추가 보유 기수	응답업체 수
장류	4.3	3
음료류	10.0	3
두부류	2.2	5
아이스크림류	6.0	1

주: 싸이로 보유 기수: 식품군별 평균 기준.

표 3-61. 싸이로 보유시 싸이로 증설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 수준

식품군	제조원가 ()% 상승	응답업체 수
어묵류	2.5	2
장류	5.0	2
제과류	3.0	1
면류	15.0	1
두부류	32.0	4
식용유지류	5.0	1
조미료류	5.0	1
아이스크림류	3.0	1

주: 식품군별 평균 기준.

[생산공정 정지]

- ‘수입국명’ 표시가 의무화될 경우 투입되는 원료 원산지 구분을 위해 생산공정을 멈춰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는 업체는 17개업체(14.7%)이었다<표 3-62>.
- 업체가 예상한 평균 생산공정 정지시간은 평균 최소 1시간(제과류)에서 최대 18.7시간(음료류)이었다<표 3-63>.

표 3-62. 표시가 의무화될 경우 생산공정 정지 가능성

단위: 개(%)

구분	빈도수(%)
생산공정을 멈춰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17(14.7)
생산공정을 멈춰야 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99(85.3)
합계	117(100.0)

표 3-63. 생산공정 정지 예상시간

단위: 시간, 개

식품군	생산공정 정지시간	응답업체수
어묵류	4.2	6
장류	2.0	2
제과류	1.0	1
음료류	18.7	3
떡류	2.0	1
두부류	9.0	8
식용유지류	10.0	1
즉석식품류	6.0	1
조미료류	8.0	2

주: 식품군별 평균 기준.

[기타 비용 및 제조원가]

- ‘수입국명’ 표시에 의해 포장재 비용, 싸이로 증설비용 이외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는 포장기설비 비용(51.6%), 관리인력비(12.9%), 보관창고증축비(12.9%), 동판수정비(9.7%) 등이 있었다<표 3-64>. 또한 표시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제조원가 상승 수준은 평균 2.0%(건강기능식품)에서 110%(장류)의 수준이었다<표 3-65>.
- 업체들은 표시 전환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수준을 평균적으로 2.0%(건강기능식품류)에서 150.0%(아이스크림류)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표 3-64. '수입국명' 표시에 의해 예상되는 비용 항목

단위: 개(%)

구분	빈도수(%)
포장기설비	16(51.6)
관리인력비	4(12.9)
원자재수급비	2(6.5)
보관창고증축비	4(12.9)
제품수거교환비용	1(3.2)
손실비용증가	1(3.2)
동판수정비용	3(9.7)
합계	31(100.0)

표 3-65. 표시를 전환할 경우 제품 제조원가 상승 수준

단위: %, 개

식품군	'수입국가명' 표시 제품 제조원가 ()% 상승	응답업체 수
어묵	66.2	21
장류	110.3	10
다류	19.0	2
제과류	13.3	4
음료류	28.9	5
면류	12.2	5
떡류	19.0	1
두부류	27.8	17
식용유지류	38.0	2
즉석식품류	20.0	1
건강기능식품	2.0	1
조미료류	100.0	1
아이스크림류	150.0	1

주: '수입산' 표시 제품 제조원가를 1000으로 환산할 때,

[표시 인지]

- 가공업체의 54.8%는 현재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14개 업체(9.7%)에 불과하였다<표 3-66>.
-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답한 업체들은 대부분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하거나(57.1%)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28.6%)<표 3-67>.

표 3-66.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인지 가능 수준

단위: 개(%)

전혀 눈의 잘 띄지 않음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임	보통	눈에 잘 띄는 편임	눈에 매우 잘 띄	합계
1(0.7)	13(9.0)	51(35.4)	69(47.9)	10(6.9)	144(100.0)

표 3-67.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표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개(%)

구분	빈도수(%)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함	4(28.6)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해야 함	8(57.1)
중요품목만 표기	2(14.3)
기타	-
합계	14(100.0)

[표시 활성화]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지도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44개업체(30.3%)이며, 업계의 자율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업체도 39개(26.9%)이었다<표 3-68>. 주기적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20.7%).

표 3-68.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

단위: 개(%)

구분	빈도수(%)
표시 위반시 사실공개	14(9.7)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14(9.7)
표시가 적정한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검사강화	44(30.3)
업계의 자율적 관리 강화	39(26.9)
주기적 홍보 및 교육	30(20.7)
기타	4(2.8)
합계	145(100.0)

5. 소결

- 가공식품업체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업체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는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자주 먹거나, 소비량이 많고,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은 식품 등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60.5%).
- 둘째, 원산지 표시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식염의 적용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밖에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개수에 대해서는 73.3%의 업체가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혼합원료 사용업체들은 대체로 현재의 혼합원료에 대한 2개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표시국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셋째, 원산지 표시제 예외조항 중 혼합비율 생략 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의 규정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입산’ 표시 규정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폐지하고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수입국가명’표시를 도입할 경우 업체들은 비용부담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수입산’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과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열거하는 방안에 대해 업체의 반대의견이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월 매출액별로 ‘수입산’ 표시 규정을 전환할 경우 선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 넷째, 제조국가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매출액 유형별로는 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복합원재료의 표시의 경우 과반수 이상(59.2%)의 업체가 평소 복합원재료 표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호하는 업체는 많지 않았다.

제 4 장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평가

- 이 장에서는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표시 이용 실태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³⁾

1. 표시 이용 실태 및 인식

■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3)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나이	20-30세 미만	23(6.1)	월소득	100만원 미만	5(1.0)
	30-40세 미만	91(24.0)		100-199만원	38(7.6)
	40-50세 미만	127(33.5)		200-299만원	122(24.4)
	50-60세 미만	99(26.1)		300-399만원	126(25.2)
	60세 이상	39(10.3)		400-499만원	98(19.6)
학력	고졸 이하	149(29.8)		500-599만원	126(33.2)
	대졸 이상	351(70.2)		600-699만원	22(4.4)
맞벌이 유무	맞벌이	239(47.8)		700-799만원	17(3.4)
	맞벌이 아님	261(52.2)		800만원 이상	18(3.6)
자녀 유무	있음	449(89.8)			
	없음	51(10.2)			

-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62.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55.2%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가공식품 원산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46.8%로 음식점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
 -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잘 알 거나,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음식점, 농산물, 가공식품 원산지에 대해 모두 97%이상이다.

표 4-1.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구분	가공식품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농산물 원산지
잘 알	234(46.8)	314(62.8)	276(55.2)
보거나 들어본 적 있음	254(50.8)	185(37.0)	222(44.4)
잘 모름	12(2.4)	1(0.2)	2(0.4)
합계	500(100.0)	500(100.0)	500(100.0)

■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관심도

-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79.6%가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답하였다<표 4-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82.4%,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76.8%가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표 4-2.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구분	관심이 전혀 없는 편임	관심이 없는 편임	보통	관심이 있는 편임	매우 관심이 많음	합계
가공식품	1(0.2)	12(2.4)	89(17.8)	252(50.4)	146(29.2)	500(100.0)
음식점	-	11(2.2)	77(15.4)	279(55.8)	133(26.6)	500(100.0)
농산물	-	6(1.2)	60(12.0)	254(50.8)	146(36.0)	466(100.0)

■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93.6%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주요 이유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48.9%)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48.3%)가 주로 제시되었다. 국내 농업 보호를 제시한 소비자는 2.4%에 불과하였다<표 4-4>.

표 4-3.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

단위: 명(%)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는 편임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	1(0.2)	31(6.2)	258(51.6)	210(42.0)	500(100.0)

표 4-4.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필요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수(%)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29(48.9)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226(48.3)
국내 농업 보호	11(2.4)
기타	2(0.4)
합계	468(100.0)

■ 원산지 표시제 이용 실태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요리를 주문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76.6%가 확인을 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표 4-5>. 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78%와 유사한 수준이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85%)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 소비자의 약 70%는 수입산 사용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미신뢰를 원산지를 확인하는 주요 이유라고 답하였다<표 4-6>.

표 4-5. 구매시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

단위: 명(%)

구분	확인하지 않음	확인하지 않는 편임	보통	확인하는 편임	항상 확인함	합계
가공식품	13(2.6)	20(4.0)	84(16.8)	237(47.4)	146(29.2)	500(100.0)
음식점	1(0.2)	18(3.6)	91(18.2)	284(56.8)	106(21.2)	500(100.0)
농산물	3(0.6)	10(2.0)	62(12.4)	270(54.0)	155(31.0)	500(100.0)

표 4-6. 구매시 원산지 확인 주요 이유

단위: 명(%)

구분	가공식품	음식점	농산물
원료 원산지에 따른 맛 차이	10(2.6)	17(4.4)	27(6.4)
수입산 사용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미신뢰	264(68.9)	288(73.8)	317(74.6)
구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 확인	109(28.5)	82(21.0)	81(19.1)
기타	-	3(0.8)	-
합계	383(100.0)	390(100.0)	425(100.0)

-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과반수 이상(52.4%)이 물품의 원재료 성분란을 통해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소비자의 62.6%는 가공식품 구입시 대체로 원재료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재료 및 함량 표시에 나타나 있는 원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편이라고 답한 소비자도 78.7%에 달하고 있다<표 4-8><표 4-9>.
- 품목류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원료 원산지 표시 확인

비중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특히 식육제품이 93.2%로 가장 높았으며, 김치·절임식품류(89.9%), 통·병조림(87.7%), 특수용도식품(87.3%)도 대체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음료류(45.8%), 아이스크림류(35.5%)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 소비자의 96.7%는 원료 원산지를 확인한 후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표 4-7. 가공식품의 원산지 확인 방법

단위: 명(%)

구분	빈도수(%)
포장지 앞면의 산지명 또는 국내산 표시 확인	175(35.9)
물품의 원재료 성분란 확인	255(52.4)
제품의 브랜드명을 보고 확인	10(2.1)
제조회사명을 보고 확인	27(5.5)
인증마크를 보고 확인	20(4.1)
합계	487(100.0)

표 4-8. 가공식품 구입시 원재료 성분표시 확인 여부

단위: 명(%)

전혀 안봄	거의 안보는 편임	볼때도 있고 안 볼때도 있음	보는 편임	거의 매번 봄	합계
1(0.2)	17(3.5)	166(34.1)	195(40.0)	108(22.2)	487(100.0)

표 4-9. 가공식품 구입시 원재료 및 함량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원재료의 원료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

단위: 명(%)

전혀 안봄	거의 안보는 편임	볼때도 있고 안볼때도 있음	보는 편임	거의 매번 봄	합계
1(0.2)	14(2.9)	113(23.2)	245(50.3)	114(23.4)	487(100.0)

표 4-10. 품목류별 원재료 및 함량 표시의 원산지 확인 여부

단위: 명(%)

구분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합계
과자류	284(58.3)	203(41.7)	487(100.0)
아이스크림류	173(35.5)	314(64.5)	487(100.0)
유가공품	396(81.3)	91(18.7)	487(100.0)
식육제품	454(93.2)	33(6.8)	487(100.0)
통·병조림	427(87.7)	60(12.3)	487(100.0)
두부류	406(83.4)	81(16.6)	487(100.0)
식용유지류	328(67.4)	159(32.6)	487(100.0)
다류	310(62.0)	177(35.4)	487(100.0)
음료류	223(45.8)	264(54.2)	487(100.0)
면류	254(50.8)	233(46.6)	487(100.0)
특수용도식품	425(87.3)	62(12.7)	487(100.0)
조미식품	377(77.4)	110(22.6)	487(100.0)
인삼제품류	399(81.9)	88(18.1)	487(100.0)
김치, 절임식품류	438(89.9)	49(10.1)	487(100.0)

표 4-11. 원산지 확인후 미구매 경험

단위: 명(%)

전혀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기타	합계
15(3.1)	377(77.4)	94(19.3)	1(0.2)	487(100.0)

■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

-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는 34.8%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유사한 수준이었다(36.8%). 그러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15.4%) 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34.4%), 원산지를 속이

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기(32.1%) 때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절반 이상이었다<표 4-13>. 이밖에 정부의 제대로 된 표시 단속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21.7%)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4-12.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는 편임	보통	신뢰하는 편임	매우 신뢰함	합계
가공식품	8(1.6)	78(15.6)	240(48.0)	170(34.0)	4(0.8)	500(100.0)
음식점	33(6.6)	161(32.2)	229(45.8)	76(15.2)	1(0.2)	500(100.0)
농산물	9(1.8)	67(13.4)	240(48.0)	181(36.2)	3(0.6)	500(100.0)

표 4-13.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미신뢰의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26(11.8)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 발생 가능	71(32.1)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체계 구축 미흡	76(34.4)
정부의 제대로 된 표시 단속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48(21.7)
합계	221(100.0)

2. 가공식품 원산지 제도 평가

2.1. 표시 대상 품목과 일반 표시 사항

■ 표시 대상 품목수

- 현재 211개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84.2%가 확
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14>.

-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으로는 자주 먹는 식품(19.4%), 소비량이 많은 식품(14.9%) 등 평소 섭취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들고 있었다. 이밖에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11.8%)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품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표 4-1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의 조정 여부

단위: 명(%)

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축소	5(1.0)
대상 품목수 확대	421(84.2)
현행대로 운영	27(5.4)
잘 모르겠음	47(9.4)
합계	500(100.0)

표 4-15. 원산지 표시 필요 품목

단위: %

구분	비중
자주 먹는 식품	19.4
소비량이 많은 식품	14.9
가공식품 원료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품	3.5
가공식품 원료가 수입이 많이 되는 식품	11.8
가공공정이 단순하여 원료 농수축산물에 가까운 식품	5.0
원료 원산지에 따라 가공식품의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식품	9.0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품목	11.3
기타	25.1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3+2순위×2+1순위×1)하여 전체 점수 중에서 해당 점수의 비중을 계산함.

■ 예외 품목

- 현재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커피, 주류, 당류, 식염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16>.
 - 예외 품목중에서 소비자들은 식염이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소비자의 89.2%가 식염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당류(79.0%), 커피(68.2%), 주류(61.2%)의 순으로 원산지 표시제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원산지 표시 예외 품목의 조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혀 적용될 필요가 없음	적용될 필요가 없는 편임	보통	적용될 필요가 있는 편임	적용될 필요가 있음	합계
커피	3(0.6)	46(9.2)	110(22.0)	237(47.4)	104(20.8)	500(100.0)
주류	6(1.2)	32(6.4)	156(31.2)	208(41.6)	98(19.6)	500(100.0)
당류	3(0.6)	8(1.6)	94(18.8)	227(45.4)	168(33.6)	500(100.0)
식염	1(0.2)	4(0.8)	49(9.8)	213(42.6)	233(46.6)	500(100.0)

■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

-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의 개수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현행의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0%이었다<표 4-17>. 또한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34.2%였다.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이보다 다소 낮은 28.2%였다.
 -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의 개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 소비자 중에서 모든 원료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70.2%에 달하였다. 이밖에 5개의 원료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4.2%였다<표 4-18>.

표 4-17.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개수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빈도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없음	8(1.6)
주원료 위주로 표시하는 현행대로 추진 필요	141(28.2)
현행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	180(36.0)
원료 모두에 대해 표시	171(34.2)
합계	500(100.0)

표 4-18. 원산지 표시 대상 적정 원료수

단위: 명(%)

구분	빈도수(%)
3개	26(7.4)
4개	50(14.2)
5개	85(24.2)
6개 이상	7(2.0)
모두 표시	183(70.2)
합계	351(100.0)

■ 혼합원료

- 동일원료에 대해 3개국이상의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2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현재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소비자가 65.6%에 달하였다<표 4-19>. 이에 비해 현행대로 2개국을 표시하는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33.2%에 불과하였다.

표 4-19. 3개 국가 이상의 원료 혼합 사용시 2개 '국가명' 표시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빈도수(%)
1개국만 표시해도 무방	6(1.2)
현행대로 2개국 표시	166(33.2)
모든 국가 표시	328(65.6)
합계	500(100.0)

2.2. 원산지 표시 예외 조항

■ 혼합비율 생략

- 특정 원료의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원산지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표시 규정에 대해서 소비자의 63.4%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표 4-20>.

표 4-20. 혼합비율 생략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103(20.6)	214(42.8)	87(17.4)	82(16.4)	14(2.8)	500(100.0)

■ 수입산 표시

-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으로 표시하도록 한 현재의 표시 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2.8%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4-21>.
 - 이러한 '수입산' 표시 규정을 '수입국가명' 표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소

비자의 95.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

-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48.6%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8.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3><표 4-24>.

표 4-21. ‘수입산’ 표시 규정의 적절성

단위: 명(%)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118(23.6)	246(49.2)	84(16.8)	47(9.4)	5(1.0)	500(100.0)

표 4-22.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에 대한 의향

단위: 명(%)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합계
-	1(0.2)	24(4.8)	233(46.6)	242(48.4)	500(100.0)

표 4-23.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 방안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2(0.4)	8(1.6)	84(16.8)	318(63.6)	88(17.6)	500(100.0)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3(0.6)	21(4.2)	129(25.8)	252(50.4)	95(19.0)	500(100.0)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49(9.8)	131(26.2)	102(20.4)	145(29.0)	73(14.6)	500(100.0)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12(2.4)	65(13.0)	102(20.4)	223(44.6)	98(19.6)	500(100.0)

표 4-24. '수입산' 표시 규정의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 방안에 선호도

단위: %

구분	빈도수(%)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	48.6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	38.5
"수입산"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6.8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 열거	6.1
합계	100.0

주: 우선순위 응답으로 가중치 부여(1순위×2+2순위×1)

○ 그러나 '수입산' 표시제품을 '수입국명' 표시로 전환시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과반수(51.0%)의 소비자가 부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5>.

- 표시 전환시 소비자의 평균적인 추가 지불 의향 금액은 '수입산' 표시 제품 대비 6.58% 높은 수준이었다<표 4-26>.

표 4-25. '수입산' 표시 제품과 비교한 '수입국명' 표시 제품에 대한 추가 지불 의향

단위: 명(%)

구분	빈도수(%)
부담 의향 있음	163(32.6)
부담 의향 없음	255(51.0)
잘 모르겠음	82(16.4)
합계	500(100.0)

표 4-26. '수입산' 표시 제품과 비교한 '수입국명' 표시 제품에 대한 추가 지불 수준

단위: %, 원

구분	평균
일반적으로 ()% 추가 부담 의향	6.58%

■ 수입산 표시 대안으로서 포괄적 표시에 대한 의견

- 포괄적 표시는 ‘수입산’ 표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이는 가공식품업체가 품질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그룹에 속한 국가(예: 미국산, 캐나다산)의 원료 농산물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포괄적 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236명(47.2%)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7>.

표 4-27. 포괄적 표시 방안에 대한 의향

단위: 명(%)

매우 적절치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합계
17(3.4)	98(19.6)	149(29.8)	201(40.2)	35(7.0)	500(100.0)

2.3. 기타 표시 개선사항

■ 제조국가 표시

- 원료의 제조국(중간가공지)에 대한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79.8%의 소비자가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된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6.2%가 찬성하고 있었다<표 4-28>.

표 4-28.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에 대한 의향

단위: 명(%)

구분	빈도수(%)
식품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됨	14(2.8)
가공지만 표시하면 됨	6(1.2)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 함께 표시	399(79.8)
일부 품목(예: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 함께 표시	81(16.2)
합계	500(100.0)

■ 가공제품의 원료 사용

-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비자의 72.0%가 찬성하였다<표 4-29>.

표 4-29.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향

단위: 명(%)

구분	빈도수(%)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1(6.2)
가공제품 원료 투입시 이전단계 투입원료명만 표시	24(4.8)
원산지명만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84(16.8)
현재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	360(72.0)
기타	1(0.2)
합계	500(100.0)

■ 표시 인지

- 소비자의 49.2%는 현재의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이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였다<표 4-30>.

- 이러한 원료 원산지의 인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글씨를 크게 하거나 (35.0%),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하고(32.9%), 글씨 색깔을 눈에 띄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9%)<표 4-31>.

표 4-30.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인지 가능 수준

단위: 명(%)

전혀 눈의 잘 띄지 않음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임	보통	눈에 잘 띄는 편임	눈에 매우 잘 띄	합계
23(4.6)	223(44.6)	175(35.0)	74(14.8)	5(1.0)	500(100.0)

표 4-31.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표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빈도수(%)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 함	86(35.0)
글씨 색깔을 눈에 띄게 바꾸어야 함	76(30.9)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해야 함	81(32.9)
기타	3(1.2)
합계	246(100.0)

2.4. 표시제에 대한 기타 의견

-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들이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불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2>. 특히 음식점 원산지의 경우 73.6%가 이러한 경험을 하였으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1.8%의 소비자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63.7%). 적극적으로 대응한 소비자의 경우 대부분은 판매점(15.9%) 또는 소비자보호원(10.5)에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표 4-32.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간의 불일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 경험

단위: 명(%)

구분	가공식품	음식점	농산물
생각한 적 있음	259(51.8)	368(73.6)	331(66.2)
생각한 적 없음	113(22.6)	49(9.8)	84(16.8)
잘 모르겠음	128(25.6)	83(16.6)	85(17.0)
합계	500(100.0)	390(100.0)	425(100.0)

표 4-33. 불일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 경우 주요 문의처(중복 응답)

단위: 명(%)

구분	빈도수(%)
판매점	71(15.9)
포장지에 기재된 판매자	30(6.7)
농림수산식품부	12(2.7)
소비자보호원	47(10.5)
호소안함	284(63.7)
기타	2(0.4)
합계	446(100.0)

- 소비자들은 최근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많이 보고(84.6%), 표시에 대한 신용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47.0%)<표 4-34>. 또한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 소비자들은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가 안전한 식품을 먹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47.0%), 이러한 제도가 가공업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86.2%). 또한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83.8%)와 선택권 보장(86.0%)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표 4-35>.

표 4-34. 최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세의 변화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은 편임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합계
표시된 것을 더 많이 보게됨	2(0.4)	9(1.8)	66(13.2)	310(62.0)	113(22.6)	500(100.0)
표시된 것을 더욱 신 용하게 됨	5(1.0)	39(7.8)	221(44.2)	199(39.8)	36(7.2)	500(100.0)

표 4-35.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식품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기여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은 편 임	보통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합계
소비자가 안전한 식 품을 먹는데 기여	3(1.0)	12(7.8)	54(44.2)	315(39.8)	116(7.2)	500(100.0)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 에 기여	3(0.6)	12(2.4)	54(10.8)	315(63.0)	116(23.2)	500(100.0)
가공식품에 대한 소 비자의 불안감 해소 에 기여	3(0.6)	6(1.2)	72(14.4)	321(64.2)	98(19.6)	500(100.0)
소비자의 선택권 보 장에 기여	3(0.6)	3(0.6)	64(12.8)	308(61.6)	122(24.4)	500(100.0)

-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시 어려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현재의 표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고(39.4%), 원산지가 표시된 원재료수가 적어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다(28.0%)<표 4-36>.

표 4-36.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빈도수(%)
원산지 표시내용이 어려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46(9.2)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재료수가 적어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못함	140(28.0)
원료 원산지 표시항목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움	55(11.0)
원산지 표시사항이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59(11.8)
원산지 표시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음	197(39.4)
기타	3(0.6)
합계	500(100.0)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45.0%), 행정지도 및 검사를 강화(26.8%)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표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20.0%)<표 4-37>.

표 4-37.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항

단위: 명(%)

구분	빈도수(%)
표시 위반시 사실공개	100(20.0)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225(45.0)
표시가 적정한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검사강화	134(26.8)
업계의 자율적 관리 강화	20(4.0)
주기적 홍보 및 교육	18(3.6)
기타	3(0.6)
합계	500(100.0)

3. 소결

- 첫째,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편(79.6%)이며, 소비자의 93.6%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 둘째, 현재 211개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84.2%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외품목의 경우에는 식염이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의 개수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현행의 표시 원료 수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 동일원료에 대해 3개국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2개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현재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소비자가 65.6%에 달하였다.
- 셋째, 소비자는 가공식품 표시 예외조항 중 ‘혼합비율’을 생략 규정과 ‘수입산’ 표시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입산’ 표시제품을 ‘수입국명’ 표시로 전환시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과반수의 소비자가 부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넷째, 원료의 제조국(중간가공지)에 대한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79.8%의 소비자가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가공된 제품을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가공원료의 국가명 및 비중을 모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찬성하였다.

제 5 장

주요국의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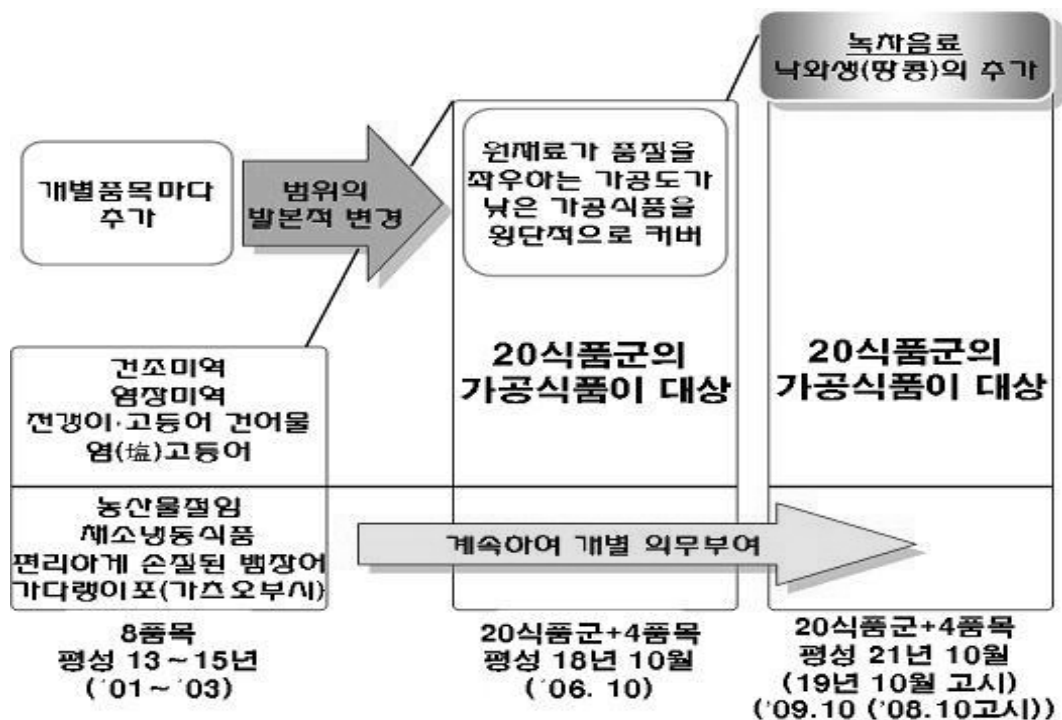
1. 일본

1.1. 추진배경

- 일본의 원산지표시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JAS법”의 ‘품질표시기준제도’에 포함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었으나, 가공식품의 원료가 다양화·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소비자의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검토위원회」에서 단순가공식품 8개 품목에 대해 원료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다(2001-2003년).
- 2004년 10월에는 원재료가 품질을 좌우하는 20개 식품군을 대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으며(20식품군+4개품목), 2009년 10월부터(2008년 10월 고시) 녹차음료와 낙화생이 추가되었다(20식품군+4품목). 20개 식품군은 일본 표준상품분류(총무성)의 분류를 기초로 하였다<그림 5-1>.
 - 원료원산지를 검토한 공동의회: 20개 식품군의 의무화(3회, 5~8회, 11회, 13~15회) →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금후의 방향”(2003년 8월)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선정기준(표시실시상황, 제조 및 유통실태,

- 소비자 관심)을 기초로 퍼블릭 멘트 및 공개청취 등을 실시하여 의무대
 상품목 20식품군을 선정함 → 이에 입각하여 2004년 9월14일 가공식품
 표시기준 개정 → 2006년 10월 2일 이후 표시의무화(2년간 유예)
- 녹차 및 낙화생의 의무화: 24~32회 → “가공식품 원료원산지표시의 새
 로운 추진에 대하여”(2006년 4월) 보고서 작성
 - 2008년 7월 이후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의견청취 및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하고, 전국 7개소에서 의견교환 실시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였다.
 - 의견교환회: 2008년 12월~2009년 1월(7개소)
 - 인터넷 앙케이트 및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앙케이트: 2008년 9~10월
 -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관계자 의견청취: 2008년 10월
 - 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소비자조사: 2008년 10월
 - 인터넷 이용 2천명조사(2008년 9월)

그림 5-1. 대상 품목의 확대 경위



1.2. 대상품목

■ 표시대상식품 선정 기준

- 원산지에서 유래되는 원료의 품질차이가 가공식품의 품질에 크게 반영된다고 인식되는 품목(요건 ①)으로, 제품 원재료 중에서 단일 농축산물의 중량 비중이 50%이상인 상품(요건 ②)
 - 1) 가공정도가 비교적 낮고, 2) 원산지에 의해 원료의 품질차이가 있어 상품의 차별화(가격 등 포함)가 있는 것, 3) 원료조달선이 해외를 포함하여 다양한 품목이 대상이 된다.
 - ①의 요건은 개별품목에 품질표시기준을 검토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보편적 가치관이다. 1) 가공식품은 제조단계가 다단계이고, 많은 원료로 제조하며, 산지가 자주 변동하는 등 모든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이며, 2) 원료의 산지가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일정품질상품을 고도의 가공기술에 의해 실현하고 연간 안정적 제공하는 등 원료의 산지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도 있다.

표 5-1. 일본의 가공식품원산지 표시대상 20개 품목군

순위	품목설명
1	건조버섯류, 건조채소 및 건조과실
2	염장버섯류, 염장채소 및 염장과실
3	삶거나 찐 버섯류, 채소, 두류
4	이종혼합해서 자른 야채, 이종혼합해서 자른 과실과 그 외 야채, 과실
5	녹차 및 녹차음료
6	떡
7	칼집난 낙화생(땅콩), 낙화생, 낙화생 및 두류
8	근약
9	조미식육
10	삶거나 찐 식육 및 식용조란(鳥卵)
11	표면을 구운 식육
12	튀김용으로 튀김옷을 입힌 식육
13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혼합해 분쇄한(기계로 간)고기와 기타 이종혼합한 식육
14	소(素)건어물류, 염건어물류, 찌서 말린어패류 및 다시마, 말리거나 구운 김, 기타 말린 해조류
15	염장 어패류 및 염장 해조류
16	조미한 어패류 및 해조류
17	삶거나 찐 어패류 및 해조류
18	표면을 구운 어패류
19	튀김용으로 튀김옷을 입힌 어패류
20	4와 13에 포함되지 않은 생선식품의 이종혼합

주: 상기의 20개 품목은 제품의 원재료 중 단일 농축수산물의 중량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임. 20개 식품군은 일본표준상품분류(총무성)에 근거해 제정됨.

- 일본의 경우 커피, 주류, 당류, 식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주류 중 미곡을 원료로 하는 경우 미곡이 이력추적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무성 소관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 적용에 대한 논의가 농림수산성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커피는 원산국별 배합비율이 기업 비밀이어서 표시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당류 또는 식염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요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1.3. 표시방법

○ 일반적인 원칙

- (1) 원칙적으로 일괄표시부분에 기재
- (2) 일괄표시부분 표시가 곤란한 경우 일괄표시부분에 표시장소를 표시, 다른 장소에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 (3) 표시는 印字, seal 등도 가능
- (4) 본 상품에 사용된 원료원산지명에 ○표시 가능
- (5)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이외의 방법에 의해 원료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사업자가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고 제조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기업의 윤리의식이 필요)
 - 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②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과 연계(예: 2차원 코드(QR(Quick Response 코드)), ③ 가게 앞의 POP(Point of Purchasing) 표시나 게시판등 활용, ④ 고객상담창구 등 소비자 문의대응에 의한 정보제공⁴⁾

4) 2차원 코드(QR(Quick Response 코드))는 일종의 바코드로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QR 코드가 인식 가능한 핸드폰으로 제품 표면의 QR 코드의 사진을 찍은 후 제품 생산 업체 등의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송하면 해당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POP(Point of Purchasing)표시는 구매시점 표시로 판매점에 진열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다.

○ 복수 원산지 원료 사용 경우

- (1) 원재료에서 접하는 중량 비중이 많은 순으로 기재한다.
- (2) 3개국이상의 원료가 혼합되는 경우 중량이 많은 순으로 2개국을 기재하고 그 외의 원산지를 '기타' 로 기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추가적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재한다.
- (3) 원산지별 원재료 비중이 자주 바뀌는 경우 동일지역(북미지역, 남미지역)내 생산에 한해서 실제 원료로 사용할 예정인 원료의 원산지명을 원산지로 차례대로 기재한다. 단 이 경우 제조일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및 원료중량비중등의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5-2. 복수 원산지 원료 사용시 표시 사례

예 1: 콩(미국 또는 캐나다)... 주) 원료대두의 원산지는 당사에서 DD년도 취급실적이 많은 순으로 표시. 상세한 것은 당사고객창구(전화번호...)에 문의.

예 2: 콩(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또는 볼리비아)...주) 표시된 원산국의 콩을 적절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당사고객창구(전화번호...)에 문의바람

예 3: 일괄표시외에 근접한 곳에 북미산 기재 경우: 일괄표시 + 원료대두는 북미산(미국 또는 캐나다)를 사용. 주)원료대두의 원산지는 당사에서 DD년도 취급실적이 많은 순으로 표시. 상세한 것은 당사고객 창구(전화번호...)에 문의

예 4: 일괄표시외에 근접한 곳에 북미산 기재 경우: 일괄표시 + 원료대두는 남미산(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또는 볼리비아)를 사용. 주)원료대두의 원산지는 당사에서 DD년도 취급실적이 많은 순으로 표시. 상세한 것은 당사고객창구(전화번호...)에 문의

부적절한 표시예:

- 콩(미국 또는 일본), 북미산(미국 또는 캐나다) 또는 중국산

○ 원료원산지표시 보완표시: 강조표시 경우

- 표시 의무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 표시를 할 경우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의 표시방법규정에 입각하여 표시(제4조의 일괄표시란 표시기준 또는 제5조의 특색있는 원재료표시의 대응)
- 국산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표시
- OO현산 원료를 사용하는지의 표시
- 계약재배 원료를 사용하는지 표시

○ 유의사항

- (1) 한 개의 제조라인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다른 원산지 원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료 교체시 발생하는 원산국이 다른 원료의 혼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 (2) 제조업체에 납입하는 조달처로부터의 원료 원산지 정보 제공 강화 추진
- (3) 원료원산지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 (4) 가이드라인 외에 가게앞 표시나 게시판 활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창구를 통한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1.4. 주요 논의 동향

- 2008년의 중국산 만두소 사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공식품 원산지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09년 10월경에 최종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과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된 주요 과제들은 1) 복잡한 원재료산지의 표시에 대한 대응, 2) 물리적인 표시공간의 제약, 3) 수입중간가공품에 대한 대응 등이다.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 수입 가능성이 있는 원료 원산지국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표시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가능성 있는 나라를 모두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우수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우량 오인’)이 지적되고 있다.
 - 이밖에 2) 대괄 표시 허용, 3) 수입중간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원재료 종류가 많고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 업체의 원산지 표시에 어려움이 따른다. 대괄 표시는 복수 원산국의 원재료가 혼합된 경우에 업체가 용이하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시된 방법이다.
 - 제품에는 대괄 표시(예: ‘수입산’)를 하고 자세한 원산지 관련 정보는 인터넷, 2차원 코드(QR 코드), 점포내 POP 표시, 고객상담창구(전화, 팩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수입중간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수입중간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원산지 정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공지’를 ‘원료 원산지’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가공식품의 ‘가공지’를 ‘원료의 원산지’로 오인시키는 표시에 대해서는 ‘산지명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산지명의 의미를 오인시킬수 있는 표시’로서 표시금지사항에서 규정되고 있다(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제6조(3)).
 - 제조국 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를 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간가공품을 제조한 국명은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이밖에 표시대상품목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나, 요건 ②(제품 원재료 중에서 단일 농축산물의 중량비중이 50% 이상인 상품)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한 표시대상품목의 확

대에 대해서는 소비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 기타 국가

- 미국과 EU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품목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스위스의 경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2.1. 미국

- 미국의 경우 원산지표시에 관한 일반규정은 미 법률집 15권 45조의 2항 “통상무역법(Commerce and Trade Act)”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에서 미국산 표시 또는 이와 동등한 표시를 판매 목적의 상품에 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45조에 따라 연방무역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에 일치하여야 한다. 연방위원회는 미 법률집 제5권 553조를 근거로 수시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002년의 “농업법(Farm Bill)”과 “추가세출승인법안(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서는 2004년 9월 30일부터 소매점에서 포장상품의 원산지표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표 5-2>.
-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에 집행이 유예되어 2008년 9월 이후로 시행이 연기되다가, 2008년에 발생한 수입 토마토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등으로 원산지 표시 실시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

하게 되었다. 업계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본격적인 시행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이루어졌다.

표 5-3. 원산지 표시 도입 경과

년도	주요 내용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품목에 대한 잠정적 자율 원산지 표시 지침 발표 - 소매업자 대상으로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의 신선/냉동 근육 부위, 다짐육, 양식 및 자연산 어류와 패류,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 땅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통합세출승인법안’에 의해 의무적 원산지표시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2006년 9월 30일로 유예 - 자연산 및 양식 어패류에 대한 잠정규칙은 2005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미국내 일부주(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와이오밍)는 자체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 시행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법안에 재서명하여 2008년 9월까지 시행 유예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 구분 세분화와 분쇄육에 대한 복수국 원산지 표시 인정 등 2002년 농업법 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8년 9월 30일부터 원산지 의무 표시 실시기로 함. ◦ 2008년 8월 1일 관보에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품목 및 대상 업종 등에 관한 잠정 최종 규칙 게재

-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신선 또는 냉동 과채류를 취급하며 연간 매출액이 최소 23만달러 이상인 소매업소’이며 적색육(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염소고기)의 근육살 및 분쇄육, 자연산 및 양식산 어류와 패류, 신선 및 냉동 과채류, 견과류(땅콩, 피칸, 마카다미아 너트), 인삼 등이다.
- 그러나 가공식품은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입 어패류를 미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원료 원산지와 가공지(미국)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공식품은 특정가공을 통해 다른 성질의 물품으로 변경된 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가공이란 조리·절임·훈제·형질변형 등이 포함

되며, 물·소금·설탕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농산물 가공품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미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입어패류와 미국산 어패류가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된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즉, 수입산 어패류는 세관에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가공품 원료에 미국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미국에서 실질변형을 거친 수입 어패류 등이 여러 개 혼합된 경우에는 각 혼합물의 원료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농무성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구체적 표시방법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원산지 표시에 따른 판매자의 부담이 고려되어야 한다.

2.2. 유럽연합

- 유럽연합(EU)은 “식품 표시 지침(Food labelling directive 2000/13/EC)”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EU 역세권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어패류, 일부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와인, 꿀, 올리브 오일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가금육 등 특정 선포장식품(pre-packaged food)을 대상으로 한다.⁵⁾
- EU 회원국은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식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통특산물인증제도와 지리적 표시제도 등에도 원산지 표시규정이 포함된다.

5) 쇠고기의 경우 “소의 식별 및 등록과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의 표시에 관한 이사회규칙 (Regulation No. 1760/2000)”을 근거로 출생, 사육, 도축국가까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가공식품은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도 EU의 원산지표시제는 EU의 역세권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음식점도 원산지표시제의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다.

2.3. 스위스

- 스위스는 “식품법(Lebensmittelgesetz)”를 근거로 특정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법에 의거하여 식품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는 식품법시행령(LMV) 제22조a에 규정되어 있다.
- 식품의 원료 원산지 및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은 최종 식품에 원재료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식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원재료의 산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식품의 명칭 또는 기타의 표시에 있어서 원료의 원산지가 식품의 원산지로 표기된 나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원료가 식품의 원산지로 표시된 나라에서 통상 생산되지 않거나, 특정한 원산지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경우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스위스산’ 표시는 전부 스위스에서 제조되거나 산출된 경우와 식품이 스위스에서 충분히 가공될 경우 할 수 있다.
 - 전부 제조·산출된 경우: 미네랄 음료수는 스위스 땅에서 추출된 것, 식물은 스위스에서 수확된 경우, 동물의 고기는 현저한 체중증가나 사육의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진 경우 동물의 산출물은 스위스에 있는 동물의 산출물
 - 충분히 가공: 가공을 통해 그 특징적인 성질을 획득하였거나 이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물건 명칭을 획득한 경우

- 그러나 생산지의 표기를 통해 원재료 또는 재료의 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또는 재료의 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의 산지가 불명확하거나 산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 원재료 또는 재료가 유래한 가장 근접한 지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식품의 원재료 및 비포장매매에서의 쇠고기의 산지표기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다음의 경우 식품의 원재료의 산지는 재료표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 최종 식품에 원재료의 비율이 50%를 넘고, 식품에 표기된 산지와 원재료의 산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식품의 명칭 또는 기타의 표기에 있어서 원재료가 식품의 산지로 표기된 나라에서 유래되었음이 시사되는 경우
 - 비포장으로 판매되는 육류, 육류가공물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
- 식품법은 “연방각의는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 보존방법, 원산지(생산지역, 생산자, 수입자 혹은 판매자), 제품종류, 제조방법, 특수 효과, 경고문, 영양소 수치 등에 대한 표시여부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장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쟁점과 대응 방향

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여부

-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수는 시행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 2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가공식품 업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84.2%가 대상 품목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공식품업체의 60.5%가 원산지 표시가 꼭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대상 품목 수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소비자 조사 결과 커피, 주류, 당류, 식염 등 표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식염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업체와 소비자 모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 가공식품업체의 53.8%, 소비자의 89.2%가 식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 당류의 경우 제조공정상의 복잡함, 커피는 제조공정상의 복잡함과 국가별 원료의 배합비율이 기업 고유의 기밀이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표시제

적용에 해당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 기밀, 공정상의 어려움, 원산지 표시제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등의 요인으로 커피, 주류, 당류, 식염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가공식품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외품목으로 되어 있는 식염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와 국가 수

- 현재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50%이상인 원료 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를 표시하고,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개수의 조정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업체와 소비자의 인식에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경우 현재의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원료 수보다 표시 대상 원료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0.2%에 달하였다. 이에 비해 업체의 경우 73.3%가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또한 현재 동일원료에 대해서 3개국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의 원산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가공업체와 소비자가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 규정이 적절하거나 오히려 완화하여 표시대상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해당업체들은 45.0%가 이러한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업체(26.7%)중 62.5%는 오히려 표시대상 국가를 1개국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비자는 모든 국가에 대해 표시하자는 의견(65.6%)이 주를 이루었다. 현행대로 2개국 표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33.2%에 불과하였다.
- 표시대상 원료 개수와 혼합원료의 표시 대상국가 수의 확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의 확대에 따라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 공간, 글씨 크기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현재에도 소비자의 49.2%는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이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씨를 크게 하거나(35.0%), 원산지 표시위치를 제품 앞면에 하고(32.9%), 글씨 색깔을 눈에 띄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32.9%).
- 표시대상 원료의 개수나 혼합원료의 표시 대상국가 수의 확대는 업체와 소비자간 입장차이가 커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원료 원산지 표시 예외조항

- 2008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의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예외조항으로 되어있는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도 대해서도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1. '수입산' 표시 규정

-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전환하여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산'으로 표시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산' 표시 규정을 전환하여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65.9%가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소비자들은 현재의 '수입산' 표시 규정에 대해서 10.4%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입국가명' 표시로의 전환에 대해 95.0%가 찬성하고 있었다.

- 업체들은 표시규정을 전환할 경우 원료 변경과 원산지 표시 변경 시점을 맞추기 어려우며, 기존의 표시설비로는 전환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표시 전환에 의해 싸이로, 인쇄기기 등 설비 추가, 포장재 제작 및 재고 처리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국가명'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반면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32.6%에 불과하다.
 - 업체들은 표시 전환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이 최소 2%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수입산' 표시 규정의 개정에 대한 소비자와의 입장 차이 뿐만 아니라 '수입산' 표시 규정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가공식품업체는 매출액 규모별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 조사 결과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와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업체는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입국가명’을 공개하거나,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모두 열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입산’ 표시 규정의 변경시행에 따라 원가부담이 큰 대기업의 경우 수입가능성이 있는 ‘국가명’을 모두 열거하거나,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수입국가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은 수입국가명 전환시 포장재 제작 및 폐기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기입해야 할 원산지가 많은 경우 표시공간 및 글씨 크기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은 기존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쇄수단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정한 인쇄수단을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의 경우 소규모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월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체는 88.5%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1억원 미만의 업체는 50.8%만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설이 불가능한 이유로 61.9%의 업체가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고 답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48.6%로 가장 선호하며,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38.5%로 비교적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산’ 표시를 유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낮다(6.8%).
- 업체들은 표시규정이 전환될 경우 즉시 이를 완전히 적용하기 위해서 대체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조사 결과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46.2%, 1억원 이상-10억원 미

만인 업체는 63.3%, 10억원 이상인 경우 33.3%가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소비자의 식품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수요와 수입원료에 대한 이력추적 등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수입산’ 표시 규정 예외 조항은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업체의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만약 ‘수입산’ 표시를 ‘수입국가명’표시로 전환할 경우에는 업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표시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매출액 규모, 품목별로 업체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수입국가명’ 표시 방법은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1) ‘수입국가명’을 기존에 법적으로 규정된 위치에 표시하는 방안과 2) ‘수입국가명’을 별도 표시된 유통기한과 함께 인쇄하는 방안을 동시에 적용하여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 Z-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일부인, 스티커 등 업체가 가능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제도 변경시 유예기간도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2. 혼합비율 생략 규정

- 현재 원산지 표시제 규정에서는 특정 원료의 혼합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고 ‘원산지국명’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대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업체의 40%가 매우 적절하다고 하는 반면, 소비자의 63.4%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업체와 소비자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업체와 소비자간 의견 차이와 함께 해당 규정의 개정은 다른 예외조항인 ‘수입산’ 표시 규정의 개정과 연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 ‘혼합비율’ 생략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유예기간은 ‘수입산’ 표시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

- 2008년에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수입된 ‘새우깡’의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원료 원산지외에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 표시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졌다.
-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에 대해서는 업체의 경우 월 매출액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월 평균 매출액인 1억원 미만인 경우 66.7%가 ‘제조국명’ 표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 30.8%, 10억원 이상인 경우 22.2%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매출액이 증가할 수록 ‘제조국명’ 표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업체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제조국명’ 표시도입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업체 비중은 1억원 미만의 경우 11.1%에서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3.1%, 10억원 이상 33.3%로 증가하고 있다.
- 가공식품 업체는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4%,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공지와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0%가 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비자의 79.8%는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와 가공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은 ‘제조국명’ 표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도입 범위와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복합 원재료 표시

- 현재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가공품을 복합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원재료에 대한 표시방법이 복잡하여 가공식품업체가 표시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에게도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조사결과 49.3%의 업체가 복합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59.2%가 현재 복합원재료 표시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 원재료 표시의 개선을 위해 복합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표시를 개별원료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업체의 53.5%가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이유로는 원료 배합비율 파악의 어려움(58.8%)과, 잦은 원료 수입선 변경(29.4%)이 제시되었다.
- 복합원재료 표시는 업체가 어려움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표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어렵다. 따라서 우선 현재의 표시방법을 유지하되 향후 다양한 표시 사례를 발굴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업체의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부 록

가공식품업체 의견 조사 결과(식품공업협회 의견)⁶⁾

1. 생산국명 표시의 문제점

1.1. 기술적 측면

- 제트 프린트를 도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표기가 불가능하다.
 - 젯트프린트 지원범위는 빈칸 등을 포함하여 한줄에 최대 40자, 두줄 각각 20자이다.

표시 사례

현재표기: 2009.12.11 까지 15:28 000 000 01295/ 총 33자(유통기한, 시간, 담당자, 일련번호)

국가명 표기시: 2009.12.11 까지 15:28 000 000 01295 유청분말(프랑스00%, 네덜란드00%, 핀란드, 아일랜드), 혼합식용유지[야자유(핀란드00%, 인도네시아00%, 말레이시아), 대두유(브라질00%, 아르헨티나00%, 미국, 태국, 대두)]/약126글자

6)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로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12월에 시행한 가공식품업체 의견 조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임.

- 제트 프린트 사용 시 ‘노즐 막힘’현상이 일어나 생산이 중단되거나, 일부 인 없이 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전량리콜’ 하여야 한다. 또한 아이스크림라인은 제품특성상 날인기 설치가 어려운 라인이 있어 날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1.2. 비용적 측면

- 압인의 특성상 글자가 길어지거나 늘어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열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분적으로 활자가 희미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레이저 제트를 구입할 필요가 발생한다.
 -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1기당 3~5천만원정도로 예상된다.
- 잉크젯의 경우에도 1열 인쇄만 가능한 타입은 추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 법적 글자크기의 제한으로 1열에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다.
 -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1기당 1~1.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료와 반제품의 엄격한 구분관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 저장고: 사일로(1기당 3~5억원 이상), 제품탱크(1기당 약 1.5억원), 저장 탱크(1기당 약 5억원). 정제설비(약 50억원)
 - 구분관리 담당 인력 : 업체별로 1~13명 추가 예상 (공장당 1인)
 - 유통기한과 같이 별도표시하는 경우, 별도 날인을 위해 날인기의 위치 조정 등의 설비조정이 필요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 현재 날인기의 조정 위치 등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 현재도 생산라인에서 일부인기계의 오류발생으로 제품의 추적, 수정, 폐기작업이 종종 발생하여 생산인력·시간·제품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

지만 ‘수입국가명’표시에 일부인을 사용할 경우 일부인기계의 오류발생률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사후수정 및 조치작업으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공유지의 경우, 곡물의 수급에 따른 다양한 원산지의 다양한 유종으로 혼합·대체하여 1차가공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원료에 대하여는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 및 비용절감 효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관리시 비용상승이 유발된다.

1.3. 법률적 측면

- 일부품목의 경우 제품포장의 특성상 글자표기 공간이 부족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 상의 글자크기(10포인트)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우유의 경우 원산지 국가명을 한줄로 표기시 글자포인트 6~7 포인트가 예상되며 두줄로 표기시 글자포인트 8~9 포인트가 예상된다.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는 일괄표시면이므로 주표시면에 유통기한과 함께 별도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한 현재 유통기한은 뒷면이나 케이스포장의 경우 측면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통기한과 함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경우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다.

1.4. 효율성 측면

- 열전사로 일부인을 찍는 경우 인쇄내용이 많아지면 먹지 테이프가 끊어지기 쉬워지는 등 포장 능력이 저하된다.

- 주표시면에 일부인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일부인에 인쇄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포장 속도가 느려지고 포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 포장지의 공간의 문제
 - 과자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원료 배합순으로 표시하는 것 외에 제품명에 들어간 원재료명이 있을 경우는 이도 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5~6개까지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인에 추가로 1~6개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포장지의 공간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

1.5. 기타 사항

■ 일부품목의 원산지 파악 불가

- 대두, 대두유, 현미 등 일부품목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괄 구매 하여 공급함으로써 원산지를 즉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선별공정에서 분리되는 소량의 작은 옥수수 입자를 일정기간 받아서 가공(분쇄)한 후 옥수수가루로 재사용하는 경우, 이들이 혼합되어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하다.
- 타사에서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 원산지 선택권이 없으며, 원료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수입국정보에 의존해야 한다.

■ 각 품목의 특성상 '수입국가명' 표시 적용의 어려움

- 대두(장류용), 대두유, 쌀(현미) 등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괄 구매

- 공급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즉시 파악하여 표기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수입국가명’표시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정부기관과 함께 조절해야 할 문제인 측면이 존재한다.
- 당류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현재 3~4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국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원산지 제공의 실익이 없다. 표시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이에 따른 포장재 등의 비용은 미미하나 원료의 엄격한 구분관리를 위한 저장탱크, 이송장비 등 추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연육의 경우, 수급·품질 상 문제로 인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원산지별 품질 검사 후 연육 혼합비율을 결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국가명’표시 적용이 어렵다.
 - 예를 들어 고급연육 50%+중국의 저급연육 50%에서 수급상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의 중급연육 50%+파키스탄 중급연육 30%+인도중급연육 20%로 변경
- 밀가루 등 원재료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산 소맥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제조국의 관련 법규 및 제조사의 설비, 기술력 등에 의해 최종 밀가루의 품질 및 안전성이 결정되어지나, 국내에서 가공한 밀가루나 완제품으로 수입된 밀가루의 차이가 없이 ‘밀가루(밀 : 미국, 호주산)’ 등으로만 표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유제품의 경우, 일부품목의 경우 제품포장의 특성상 글자표기 공간이 부족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상의 글자크기(10포인트) 준수할 수 없으며, 구분관리를 위한 사일로 설치 등 막대한 시설비용이 발생한다.
- 가공유지의 경우,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곡물의 수급에

따른 다양한 원산지의 다양한 유종으로 혼합, 대체하여 1차가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가명’ 표시 적용은 비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 과자의 경우, 원료 배합순으로 표시 외에도 제품명에 들어간 원재료명이 있을 경우는 이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5~6개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비용 이외에도 포장지 공간 활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 주요원료의 글로벌 원료조달 제한

- 주요원료 수입국의 변경은 구매단가 절감, 원료의 안정적 수급, 양질의 원료 수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서, 최근의 세계경제 및 곡물의 상황이 악조건 속에서 원산지표시만을 위하여 일정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원료를 수급하게 되는 것은 경제논리에도 벗어난다.

■ 소비자의 실효성 미흡

- 최근 영양성분표의 확대표시, 복합원료 및 혼합제재 성분의 전체표시 등으로 인하여 제품표시면적대비 의무표시사항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여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 기타

- 제트프린터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외의 원산지표시로 프린팅작업구간의 증가로 잉크의 비산확률이 높아져, 위해물질(잉크)이 제품의 혼입가능성이 증대된다.
- 일부인 작업글자를 길게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일부인기계의 오류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위해에 중요한 유통기한표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리스크 관리상 의도치 않은 표시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 될 때마다 날인기의 글자를 변경·조정해야 하므로 오인이나 실수로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포장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포장재를 대량 주문하는 특성상 재고비용이 높기 때문에 ‘수입국가명’ 표기시 포장재 재고에 대한 부담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 특히, 테트라팩의 경우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원산지 표시제 변경시 추가 예상비용

- 조사 대상 업체들은 수입국가명 표시기 예상되는 추가비용을 최소 약 1,000만원(대한제분)에서 257억원 수준(남양유업)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 대비 추가비용의 비율은 최소 0.1%(대한제분)에서 최대 18.6%(삼양식품)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인은 실제 적용 또는 적용에 따른 발생 비용의 추정이 어려운 업체가 존재하였다. 응답업체 중 일부인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답한 업체가 약 5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그림 부록 1-1. 원산지 표시제 변경에 따른 추가 예상 비용

단위: 억원, %

업체명	수입산 표시 제품 매출액(A)	수입국가명 표시시 추가비용(B)	수입국가명 표시시 추가비용 비율 (B/A)	일부인 사용시 추가비용
CJ제일제당(주)	4,552	153.6	3.4	-
롯데제과(주)	5,812	121.0	2.1	5.2
남양유업	1,500	256.9 (2가지 제품군 적용수치)	-	실제사용 불가
삼육식품	450	22.8	5.1	2.0
(주)롯데햄	410	13.1	3.2	-
(주)동원F&B	668	10.6	1.6	0.035
(주)오리온	765	23.1	3.0	기존포장대비 40%
동서식품(주)	434	1.4	0.3	0
대한제분(주)	118	0.1	0.1	1.8
(주)신동방CP		14.3	-	0.05
삼양식품(주)	70	13.0	18.6	11
(주)크라운제과	2,500	12.2	0.5	실제사용 불가
(주)빙그레	900	15.8	1.8	0.048
(주)한국야쿠르트	150	0.8	0.5	-
해태제과(주)		64.4	-	추정불가
계	18,329 (2개 업체제외)	723.1	3.5 (2개 업체제외)	-

참고 문헌

- 노영화·김인숙. 1999. 「식품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동규·유남식. 1995.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방호경. 2004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송이. 2005. 「원산지규정이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이계임 등. 2004.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 등. 2005a.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 등. 2005b.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1.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04.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정책연구보고 C2009-30

가공식품 원료 등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8.

발 행 2009. 8.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경희정보인쇄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